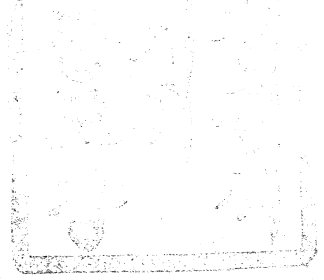


310.111
통 147
41885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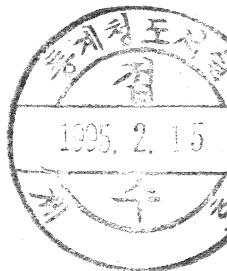


가구관리 지침서

1995

통 계 청

50995



차 례

I. 현행 가구표본 표본설계 개황	3
1. 표본개편 개요	5
2. 표본조사구의 유지관리	10
3. 표본구역의 관리	12
4. 표본거처의 변동처리	12
5. 표본가구의 변동처리	13
II. 기본자료의 작성 및 수정보완	15
1. 기본자료의 종류 및 개요	17
가. 조사구요도, 거처변동내역서	17
나. 가구표	17
다. 가구명부	18
라. 변동사항종합표	18
마. 변동보고서	18
바. 작성시 유의사항	18
2. 기본자료의 작성요령	19
가. 조사구요도, 거처변동내역서	19
(1) 조사구요도	19
(2) 거처변동내역서	20
(3) 조사구별 가구관리	21
나. 가구표	22
(1) 작성목적	22
(2) 작성방법	22

다. 가구명부 -----	45
라. 변동사항종합표 -----	46
마. 변동보고서 -----	47
3. 변동사항별 기본자료 작성요령 -----	56
가. 조사대상 가구상의 변동사항 발생시 -----	56
나. 기존조사대상 가구원 상의 변동사항 발생시 -----	59
Ⅲ. 조사표류 내용 검토 및 제출 -----	63
1. 조사표류 내용 검토지침 -----	65
가. 가구표 -----	65
나. 변동보고서 -----	66
다. 인구동태 표본조사표의 변동보고서 대조검토 -----	67
라. 인구동태 표본조사표와 가구표 대조검토 -----	68
2. 조사표류의 제출 -----	69
가. 제출상의 유의점 -----	69
나. 제출할 조사표류 -----	69
다. 제출일자 -----	69
참고 : 부호기입 요령 및 주요 착오사례 -----	71
1. 부호기입 요령 -----	73
2. 주요착오 사례 -----	93
※ 가구관리용 각종양식	

I. 현행 가구표본 표본설계 개황

I. 현행 가구표본 표본설계 개황

1. 표본개편 개요

가. 표본개편의 시기 및 필요성

(1) 표본개편의 시기

- UN권고안에 따라 매 5년주기로 개편하며 0,5로 끝나는 해를 기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2,7인 해에 표본을 개편
- 3,8의 해에 적용·시행한다.

(2) 표본개편의 목적

- 표본의 노후화를 방지하고 현실반영도를 제고하여 조사결과의 정도 제고와
-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른 사회적여건,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인한 보다 세분화되고 정도 높은 통계제공.

나. 표본개편 대상

경제활동인구조사, 인구동태표본조사, 도시가계조사

다. 표본개편 기본방향

- (1) 개편당시 조사인력수준에 적합한 최적 표본설계
- (2) 예산과 인력을 최소화하는 다목적표본설계방법 적용

라. 표본추출 개요

(1) 기초자료 정리

'90총조사 10%표본중 섬조사구 및 시설단위 조사구를 제외한 18,524개 보통조사구를 추출단위 조사구로 설정, 산업별 취업자수, 거처종류별 가구수, 거처당 평균가구수 및 건평 등의 기초자료를 집계하고 이와 관련된 분류지표를 산출하였으며 총조사가구수를 10으로 나누어 반올림한 결과를 크기의 측도로 부여.

(2) 추출단위조사구 명부의 작성

추출단위조사구 명부는 '92. 7. 1 현재 행정구역에 의한 6대도시와 각도 시부 및 군부의 24개 지역별로 각각 작성, 조사구의 분류방법은 상지역별로 산업 및 주택특성 등을 고려하여 각각 달리 적용하였고 최종적으로는 행정구역번호, 조사구번호 순서로 분류.

(3) 표본조사구의 추출

추출단위조사구 명부에서 24개 지역별 표본수에 따라 크기측도에 비례하는 확률로 계통추출하여 경제활동 및 인구동태조사는 1,076개(시부는 805, 군부는 271), 도시가계조사는 시부 805개중 651개를 표본조사구로 하였다. 추출된 표본조사구에서는 조사구요도 및 가구명부를 재작성·보완하였다.

(4) 표본구역의 선정

(가) 구역의 설정

- 각 조사구별로 새로 작성된 표본조사구 요도에서 거처가 지리적으로 인접되도록 여러개씩 묶어서 조사구내 거처를 가구수에 의한 크기의 측도와 같은수의 구역으로 나누었다.
- 가구수에 의한 크기의 측도라 함은 199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의 가구수를 10으로 나누어 반올림한 결과를 말한다. 이때 조사구내의 거처들을 구역화할 때에, 각 구역간 거처수는 다르게 되더라도 가구수는 균등하게 되어야 하며, 표본조사구내에 주택 신축이 가능한 공지(택지)가 있는 경우는 공지의 면적을 각 구역으로 균등하게 배분시켰다.

(나) 구역의 표본추출

- 각 조사구별로 중앙에서 지정한 표본구역을 포함하여 3개의 구역을 각각 표본으로 추출하되 처음에 표본으로 지정된 표본구역 북쪽의 구역부터 시계바늘 방향으로 서로 인접한 구역을 추출하였다.
- 표본으로 추출된 구역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인구동태표본조사를 전수조사로 실시한다.
- 도시가계조사를 실시하는 조사구의 경우에는 3개의 구역중에서 중앙에서 지정한 구역을 도시가계 조사구역으로 하며, 이구역에서 전수조사로 실시한다.

마. 표본규모

현재 확정된 표본규모는 다음과 같다.

	경제활동조사구수	도시가계조사구수
전국	1,149 (*)	700
시부	873	700
6대도시	546	414
군부	276	-

- (*) · 심사확정당시('92. 10. 1) 1,076개 조사구에서 15개 조사구분할
- '94. 11월분 조사시 1개조사구 분할
- 신축아파트 표본 조사구 57개 추가

바. '93 표본개편의 특징

(1) 도시가계조사의 지역통계 생산가능

구표본이 경제활동인구조사만 지역통계(15개 시·도별) 생산이 가능한 것을 현행 표본설계에는 도시가계조사의 경우도 지역통계(연간자료:15개 시·도) 생산이 가능토록 설계하였다.

(2) 분류지표의 추가

현행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경우 해안선 인접지역 여부에 따라서 산업구조의 차가 크게 나타났으나, 이를 구표본이 반영치 못하던 것을 금번 이를 반영하였다.

도시가계조사의 경우도 구표본에서 주택의 종류만 반영(단, 아파트는 난방시설도 반영)하던 것을 주택의 규모, 주택당 평균가구수 및 건평지표를 추가로 반영하였다.

(3) 비표본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인구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구 경

계를 재조정(광활한 조사구의 경우 거처의 신축전망이 낮은 지역은 제외) → 조사구의 구역설정당시 주택 신축 가능택지가 있는 경우 이 택지도 가급적 균등하게 각 구역에 포함시켜 구역을 설정, 조사구역 내의 신축거처 가구는 모두 조사하도록 하였다.

(4) 군부의 조사구당 가구수 조정으로 정도 제고

과거에는 조사구당 가구수가 시부는 평균 30가구, 군부는 40가구로 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군부가 근무지로부터 원거리에 있어 교통편이 불편하여 조사구 현장체재 시간부족으로 조사의 질적저하 요인이 되고있어, 이를 시부와 동일한 30가구로 축소 조정하고 대신 조사구수 증가[현재 231개 → 개편 276개]로 오차를 감소시켜 정도를 제고토록 하였다.

(5) 소비자 물가지수 작성에 필요한 가중치 산정이 가능토록 설계

32개 도시별로 작성하고 있는 소비자 물가지수 작성 지역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6) 표본의 유지관리 방법 개선

- 조사구내의 조사구역에 대한 집중관리로 정도제고

주택신축 가능지역(공터)포함, 가구수를 감안한 구역설정후 조사구역내의 신축가구는 모두 조사(구 표본은 신축거처 순서대로 조사 구역별로 배분 - 전지역 조사)

2. 표본조사구의 유지관리

가. 표본조사구 경계선

'90 인구주택총조사 당시 작성된 총조사 기본도, 조사구역도 및 가구 명부를 참고로 하여 조사구의 경계선을 재설정하였음.

나. 표본조사구의 분할

표본조사구 확정 이후 신축거처와 자연증가로 인하여 조사대상 가구수가 '90 총조사 당시의 가구수보다 2배 이상 증가된 경우에는 조사구를 분할하여야 하는데, 분할 대상의 표본조사구 발생시는 다음 양식에 의하여 조사구 경계선내의 모든 거주가구수를 기재, 표본조사구 요도를 첨부하여 분할 요청한다. (비조사 구역포함)

표본조사구 분할요청(양식)

사무소

조 사 구 번 호	구 역 및 거 처 번 호	'90총조사 당 시 가 구 수	분 할 요 청 당 시 가 구 수	분 할 조 사 구 수	비 고

* 분할조사구수 = 분할요청당시 가구수 ÷ '90총조사당시 가구수

* “비고” 란에는 조사구특성 및 가구 증가사유를 기재

다. 조사구의 철거

(1) 표본조사구의 전부철거

표본조사구의 전거처가 철거예정이라는 정보를 입수하였을 때는 그

내용(철거예정시기, 철거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 최소한 철거 예정 3개월전에 보고하여야 하며, 철거가 확실해진 경우에는 즉시 철거일자, 철거사유 등을 서면으로 보고한 후 조사관리과의 지시에 따른다.

(2) 표본조사구의 일부철거

표본조사구의 일부만이 철거되어 확정당시 조사대상 가구수의 1/2 미만이 남게된 경우에는 즉시 철거일자, 철거사유 등을 서면으로 보고한 후 조사관리과의 지시에 따른다.

(3) 표본조사구의 변동

표본조사구의 가구들이 윤락가, 유흥가, 시장 등으로 변동되어 일반가구들이 1/2 미만으로 감소될 경우에는 그 변동사유를 서면으로 보고한 후 조사관리과의 지시에 따른다.

라. 신축아파트에 대한 추가 표본조사구의 설정

(1) 조사구 경계선의 설정

총가구수가 60 ~ 70 가구가 되도록 1개의 동 또는 2개 이상의 동이 인접하도록 선정하여 경계선을 확정한다.

(2) 조사구역의 선정

표본개편으로 조사구요도 및 가구명부(표본조사 구역설정용) 작성 지침서('92.9 배포)에 의거 1개 구역이 10가구 내외가 되도록 구역을 설정한 후, 3개구역을 선정하여 경제활동및 인구동태조사를 실시하고, 도시가계조사 실시조사구인 경우에는 경제활동 조사실시 3개

구역중 중앙에서 지정한 1개 구역을 선정하여 도시가계조사를 실시한다.

3. 표본구역 관리

구표본이 집락단위로 조사대상 가구를 선정한 데 비하여, 현행 표본은 구역단위로 조사대상 가구를 선정하였다. 구역이란 조사구를 지역별로 분할하여 설정한 것으로 신축거처 발생시 신축거처가 발생한 구역에 포함하여 관리한다.

4. 표본거처의 변동처리

가. 철거거처

표본조사구내의 일부거처가 철거된 경우에는 조사구요도에 철거표시를 하고 거처변동 내역서에 그 내용을 보고하며, 조사대상 구역의 거처인 경우에는 해당거처의 조사를 중지한다.

나. 신축거처

표본조사구내에 신축거처가 발생된 경우에는 조사구요도에 거처의 모양을 표시하고, 거처변동 내역서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고한 후 조사구역내 신축된 경우에는 즉시 조사한다.

다. 신축아파트 및 연립주택

표본조사구의 경계선내에 아파트가 신축된 경우에는 분양가구수가 30가구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서식에 의하여 별도로 보고하고 30가구 미만인 경우에는 신축거처의 요령에 의한다.

연립주택이 건축된 경우에는 가구수와는 관계없이 조사관리과에 보고한 후 지시에 따른다.

신축아파트 및 연립주택 보고(양식)

조사구번호 _____

아파트 명칭	소재지	준점사 공일	동수	* 평형	분양 가구수	비고

* “평형”란에는 50% 이상을 차지하는 대표평형을 기재
(단, 대표평형이 50% 미만시는 가장 많은 평형을 대표평형으로 본다)

5. 표본가구의 변동처리

가. 경제활동 및 인구동태 표본조사 대상가구

표본거처내의 가구증감에 관계없이 모든가구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되 조사대상 가구수가 2배 이상이 된 경우와 가구수가 자연감소로 인하여 ½미만이 남게 된 경우에는 조사관리과에 보고한 후 지시에 따른다.

나. 도시가계조사

조사대상 구역 설정당시 적격가구의 ⅔이상이 부적격 가구로 변동되거나 또는 적격가구수가 3가구 이하로 변동된 경우에는 조사관리과에 보고한 후 지시에 따른다.

다. 조사구역중 1개 구역의 가구수가 표본조사구 확정당시('92. 10. 1)에 비하여 2배 이상 증가되었을 경우는 즉시 조사관리과로 보고한 후 지시에 따른다.

Ⅱ. 기본자료의 작성 및 수정보완

Ⅱ. 기본자료의 작성 및 수정보완

1. 기본자료의 종류 및 개요

- 가구부문조사 대상가구를 관리하기 위한 기본자료에는 ① 조사구역도, ② 거처변동내역서, ③ 가구표, ④ 가구명부, ⑤ 변동사항종합표 및 ⑥ 변동보고서가 있다.
- 그중 ③ 가구표와 ⑥ 변동보고서는 전산 가구관리 대장(Master File)용 기본자료로 사용된다.

가. 조사구역도, 거처변동내역서

(1) 조사구역도

- 조사구내 거처 및 지형지물의 분포상태를 파악하여 약도형식으로 작성하며, 조사구 경계선내의 거처가 빠짐없이 분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2) 거처변동내역서

- 조사구내 거처변동상태 지형지물의 변동상태 및 신축거처의 거처 번호부여 결과 등을 매월 파악하여 작성하고, 이의 내용을 요도에 보완한다.

나. 가구표

- 조사구내 가구전입 및 조사구 추가추출등으로 새로운 가구가 조사대상 가구로 지정되었을 경우, 가구·거처·가구원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여 가구단위로 작성하며, 대상가구관리 대장(Master File)작성용 기본자료로 사용된다.

다. 가구명부

- 조사구내 가구구성 파악을 위하여 조사구단위로 작성하며,
- 조사구번호, 구역 처치 가구번호, 가구주 이름, 가구구분 등의 내용을 기입한다.

라. 변동사항종합표

- 매월 조사구내 가구 및 가구원수와 이의증감을 파악하여 작성한다.

마. 변동보고서

- 매월 조사구내 가구, 가구원의 전입, 전출 및 변동사항을 파악하여 작성하며, 대상가구관리 대장(Master File)갱신자료로 사용된다.

바. 작성시 유의사항

- 모든 조사사항은 가구원 개개인에게 묻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이는 실행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가구의 책임있는 응답자 즉 가구주나 각 가정의 주부를 대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 동거인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본인을 직접 면접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 책임있는 응답자를 면담하기가 극히 어려운 경우에는 가구표를 가구주에게 맡겨 기입토록 하고 다음날 이를 회수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 도시에서 면접을 거부할 경우 대문밖에서 대강의 문답으로 끝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 면접을 거부하거나 비협조적인 가구에 대해서는 조사원은 몇번이라도 재방문하여 조사담당자의 신분과 통계조사의 목적 및 조사 결과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음을 설명하여야 한다.
- 수차의 노력에도 안정된 상태에서 면접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통, 반장 혹은 이장에게 이러한 취지를 설명하고 그들을 대동 방문하거나 사무소의 관리직에 협조를 받도록 한다. (이러한 사항은 조사내용의 정확성과 관계가 있으므로 반드시 가구표 『18비고』란에 기입하여 둔다.)
- 생년월일은 틀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재확인하고 임신여부 등에 관한 사항은 본인에게만 묻는다.

2. 기본자료의 작성 요령

가. 조사구요도, 거처변동내역서

(1) 조사구요도

- 조사구란 인구동태표본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도시가계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추출된 일정지역을 말하며, 조사구에서 조사된 자료는 모집단의 특성을 추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된다.
- 정확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조사대상가구가 중복되거나 누락됨이 없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는 조사구 및 구역 경계와 경계내 거처 및 지형지물의 분포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조사구요도는 이러한 목적하에 작성되는 것으로 조사구내 지형지물의 분포상태를 표시한 지도를 말하며 다음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가) 경계선의 확인 및 수정보완

- 조사구역도상 조사구역경계선은 흑색, 조사구역은 적색, 각구역경계는 청색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변경사항에 대하여 조사구역도와 가구표를 가지고 경계선을 따라 실지로 답사하여 이를 확인하면서 누가 보아도 쉽게 경계선을 찾을 수 있도록 경계선상의 중요 지형지물을 요도의 경계선상에 추가로 보완토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설명을 추가하여야 한다
- 만일 실지로 경계선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조사과장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나) 각종지형지물의 확인

- 경계선의 확인이 끝나면 경계선내의 각종 지형지물을 일일이 확인하여 해당 위치에 사실 그대로 표시되어 있는지 누락된 것이 없는지 또한 착오된 것이 없는지를 세밀하게 검토 보완하여야 한다.

(2) 거처변동내역서

조사구 순회 및 가구방문시마다 거처의 신축 및 철거, 도로의 확장 등 조사구내 각종 지형지물의 변동을 파악하여 다음과 같이 조사구역도를 수정, 보완하고 거처변동내역서를 작성한다.

- 신축(누락)거처의 경우

담당조사구 경계선내의 지역에서 신축거처(30가구분 이상의 아파트 제외 : 별도양식으로 보고) 및 누락거처가 발견된 경우에는 거처 위치를 확인하고 거처번호를 부여하여 요도에 보완하고, 이의 내용을 거처변동내역서에 기입하여 보고한다.

- 철거(착오) 거처의 경우

요도상의 해당 거처번호 위에 『×』표를 하여 요도에 보완하고, 이의 내용을 거처변동내역서에 보고한다.

- 기타 지형지물의 변동 및 거처의 변동이 심한 경우

조사구요도상의 변동된 내용대로 요도에 보완하고, 이의 내용을 거처변동내역서에 수정 보완하고, 거처의 변동이 심한 경우에는 수시로 요도를 재작성하여 조사관리과로 송부한다.

- 주의사항

이미 부여한 거처번호는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조사담당자 마음대로 변경해서는 안되며, 신축이나 누락의 경우는 구역별로 기존번호에 연결하여 반드시 조사구 전체(비조사 구역 포함) 변동사항을 매월 파악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신축거처 발생시 처리 요령

'93 표본개편의 특징은 2차 추출단위가 구역단위로 추출된 데 있으며, 구역이란 지역개념으로 조사구를 지역별로 분할하였으며 각 구역 경계내 신축거처는 해당구역에 포함조사한다.

(3) 조사구별 가구관리

- 조사구역 : 매월 파악관리(현행방법과 동일)

- 비조사구역 : 가구의 대량증감(2배 또는 1/2)이 없는 경우는 년2회(6, 12월말 기준) 보고한다.

· 가구수 표시 : 조사구요도상의 거처마다 매반기 1회 가구수를 연필로 반드시 수정보완 하여야 한다.

· 가구명부 : 매반기 1회 변동사항만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나. 가구표

(1) 작성목적

- : 조사대상 가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과약
- : 전입, 누락, 착오, 거처신축으로 인한 신규전입 등으로 새로이 조사 대상 가구로 지정된 경우 신규로 작성하며, 가구원전입 또는 가구, 가구원 사항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수정한다.

(2) 작성요령

- 일련번호 :

--	--	--	--	--

- 처음 2자리는 사무소번호를 기입한다.

사무소번호

· 서울 사무소: 11	· 강원 사무소: 32	· 경북 사무소: 37
· 부산 사무소: 21	· 강릉사무소: 44	· 경남 사무소: 38
· 경기 사무소: 31	· 충청북 사무소: 33	· 서울 산출사무소: 45
· 인천출장소: 41	· 충청남 사무소: 34	· 제주 사무소: 39
· 동부출장소: 42	· 전남 사무소: 35	
· 북부출장소: 43	· 전남 사무소: 36	

- 나머지 3자리는 전입가구표를 조사구단위로 한데 취합하여 가구번호순으로 분류한 후 '001'부터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1. 조사구번호

행 1	행 2	행 3	행 4	행 5	행 6	행 7
-----	-----	-----	-----	-----	-----	-----

· 행1과 행2 : 시·도를 나타내는 “한국 행정구역 분류” 를 기준

· 서울 : 11	· 대전 : 25	· 전북 : 35
· 부산 : 21	· 경기 : 31	· 전남 : 36
· 대구 : 22	· 강원 : 32	· 경북 : 37
· 인천 : 23	· 충청북 : 33	· 경남 : 38
· 광주 : 24	· 충청남 : 34	· 제주 : 39

· 행3 행4 행5 : 시지역과 군지역 구분 및 조사구 일련번호

- 특별시 및 광역시

: 행3, 4, 5 ; 표본이 추출된 순서를 표시하는 조사구 일련번호임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기타의 도

: 행3 ; 시지역과 군지역 여부를 표시(시지역 : 1 군지역 : 2)

: 행4, 5 ; 표본이 추출된 순서를 표시하는 조사구 일련번호임

· 행6 행7 : 표본추출 이후의 행정구역 변동 및 조사구 분할여부

표시

: 행6 ; '90 총조사 당시보다 가구수가 2배 이상으로 증가되어 조사구를 분할한 경우 그 순서를 나타내는 지정번호를 기재하나 분할이 없는 표본조사구는 기재하지 않는다.

: 행7 ; 행정구역이 군부에서 시부로 변동된 경우에 사용하기 위한 항이며 변동이 없는 표본조사구는 기재하지 않는다.

* '95.1 통합시·군(35개) 지역은 별도지시가 없는 한 종전과 동일하게 처리

2. 구역번호

- 구역번호 :

--	--

지정된 구역번호를 두자리 숫자로 기입한다.

3. 거처번호

- 거처번호 :

--	--

- 거처번호는 구역내의 거처에 대해 부여하는 일련번호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요령에 의거 거처번호를 부여한다.
- 원칙적으로 사람이 살고 있거나 “살 수 있는 곳”에 부여한다.
- 방과 취사시설을 보유하고 상주할 가능성이 있는 곳에 부여한다.
- 예외적으로 호텔·여관 등의 숙박업소와 기숙사·수녀원 등의 주인가구, 토목공사 현장의 조립식 주택, 비닐하우스·천막·토굴 등의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는 거처번호를 부여한다.

4. 가구번호

- 가구번호 :

--	--	--	--

- 가구표의 가구번호는 그 거처내에 몇가구나 생활하도록 구획되었는지, 그리고 그 가구가 몇번째 변동된 가구인가에 따라 기입한다
- 기입요령은 처음 두 칼럼에는 그 거처내에 살고있는 가구수를 2자리로 기입하며 나머지 2칼럼은 처음 가구번호를 부여한 뒤 그 가구가 몇번 변동되었는가를 2자리로 기입한다.

※ 예) · 3번 거처에 3가구가 살때 그 첫번째 가구는 처음과 똑같음(변동하지 않았음) → 0101

· 3번 거처에 3가구가 살때 그 두번째 가구는 세번 이사하고 네번째 이사들어 온 가구임 → 0204

- 그리고 전입가구의 경우에는 가구번호 끝의 두 칼럼만 변동되도록 가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중간에 전출가구가 있더라도 이 전출가구의 가구번호를 다시 사용해서는 안된다.

예외인 경우

- 첫째; 같은 거처내에서 이동할 경우에는 가구번호를 바꾸지 않는다
예를들면 어떤 거처에 3가구가 살고 있는데 1가구가 전출했을 때 그 옆방에 살던 가구가 그곳으로 이동할 때는 가구번호를 변동하지 않는다. (이동이유는 방이 따뜻해서, 부엌이 조금 더 넓으니까 등)
- 둘째; 같은 거처내에서 다른 가구가 사용했던 곳까지 합해서 사용할 때는 가구번호를 바꾸지 않는다.
예를들면 어떤 거처에 3가구가 살다가 한 가구가 전출했을 때 그 전출가구가 살던 곳을 옆방에 살던 가구가 사용할 때는 가구번호를 변경하지 않는다.

참조1. 가구의 정의

가구라 함은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생활단위이다. 따라서 가구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 보통가구

원칙적으로 혈연관계가 있는 2인 이상이 생활을 같이하고 있는

가구

- 단독가구

한사람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구, 즉 한사람이 집을 모두 사용하거나 방을 빌려서 자취를 하는 경우

- 비혈연가구

혈연관계를 갖지 않는 여러 사람이 한데 모여 가구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살고 있는 가구 즉, 다방, 미장원, 이발소, 음식점 등에서 전혀 혈연관계가 없는 종업원들이 함께 그 곳에서 먹고 잘 경우

※ 특히 주의하여야 할 경우

- 남의 집에서 숙식을 같이하는 사람은 별개의 가구가 될 수 없고 주인가구의 가구원으로 한다. (단, 비혈연인 사람들이 6인 이상일 경우에는 이들을 함께 묶어 별개의 가구로 조사한다.)
- 부부나 가족이 함께 하숙을 하는 경우는 별개의 보통 가구가 된다.
- 고용주와 같이 살면서 숙식을 같이하는 가정부, 점원, 기타 고용인 등은 주인가구의 가구원으로 한다.
- 기숙사, 양로원, 고아원 등은 조사편의상 수용인원에 상관없이 가구의 형태개념에서 제외한다. 조사구안에 기숙시설이나 특수 사회시설(양로원, 고아원, 요양원 등)이 새로 생길 경우 이와 같은 시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 외국인 가구에 살고있는 우리나라 사람은 별도의 한 가구로 한다.
- 외국인은 조사하지 않는다. (외국인의 기준은 국적을 기준함)

《알아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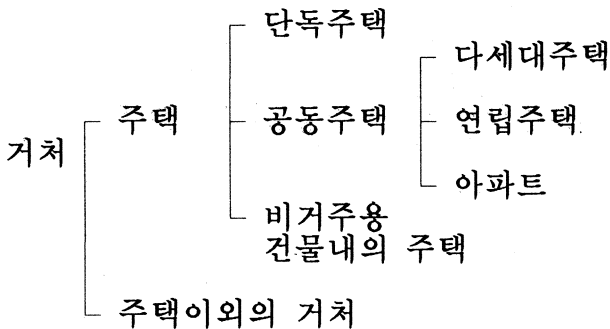
○○기숙사, ○○양로원과 같이 기숙시설이나 특수사회시설의 명칭이 있을 때는 수용 인원수에 관계없이 기숙시설이나 특수사회시설로 간주하며, 시설의 고유명칭이 없다하더라도 조사당시 그 시설내의 수용인원이 20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숙시설이나 특수사회시설로 간주하여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20인 미만이 기거하고 있는 집단시설은 비혈연 가구로 간주하여 조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나 그 안의 보통가구(양로원, 요양원, 고아원 등의 관리인가구, 기숙사 사감의 가구 등)는 조사한다.

5. 거처구분

거처란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장소로 구조적으로 분리되고 독립된 하나의 거주단위를 말하며, 주택과 주택이외의 거처로 구분한다.

참조2. 거처의 종류

거처란 사람이 살고 있는 장소를 통칭하는 말로서 구조적으로 분리되고 독립된 하나의 거주단위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주택의 요건

영구 건물
한개 이상의 방 및 부속
독립된 출입구
관습상 소유 또는 매매의 한단위

단독주택

원칙적으로 한 가구만 살도록 건축된 건물로서 주택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다가구 주택도 포함한다.

다세대주택

두 가구 이상이 살도록 연립하여 건축된 4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연건축 면적이 330m^2 (100평)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연립주택

두 가구 이상이 살도록 연립하여 건축된 4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연건축 면적이 330m^2 (100평)보다 큰 경우를 말한다.

아파트

한 건물내에 다수의 가구가 살 수 있도록 분획되어 있는 5층 이상의 건물을 말한다.

비거주용 건물내의 주택

살림을 목적으로 건축하지 않은 건물(여관, 식당, 상점, 사무실, 공

장 등)에서 사람이 살고 있는 경우 그 거주 부분이 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때 그 건물을 말한다.

* 『단독주택』인지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인지 판단이 모호한 경우에는 주거와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비교하여 주거용이 크면 『단독주택』으로 영업용이 크면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으로 구분한다.

*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은 주택의 요건중 매매 또는 소유의 한 단위가 해당되지 않아도 주택임

주택이외의 거처

사람이 거주하고 있으나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모든 거처

- 호텔, 여관 등의 숙박업소

- 기숙사, 수녀원 등 특수사회시설

기숙사, 수녀원, 양로원, 고아원, 보육원 및 대사찰 등과 같이 집단 수용을 위한 구조물.

- 오피스텔(사무실 및 거주겸용)

- 천막집, 비닐하우스, 판자집, 움막, 건설공사장의 임시막사등
임시적 거주를 위한 구조물.

6. 소유구분

: 거처소유형태를 구분하여 적는다.

참조3. 거처의 소유구분

1. 자 가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가구주나 가구원 소유의 집에서 거주하는 경우

2. 무 상

집세(방세)를 내지않고 사는 집(방)

3. 관공사택

관청 및 회사소유의 직원 주거용 주택(유상 및 무상 포함)

4. 전 세

집주인에게 정해진 돈을 이자없이 맡기고 들었다가 나갈 때 다시 찾게되는 셋집(셋방)

5. 보증부월세

보증금을 내고 세를 매월 지불하는 셋집(셋방)

6. 사글세

일정한 돈을 보증금으로 지불하고 매월 정해진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셋집(셋방)

7. 월 세

보증금없이 정해진 월세를 매월 지불하는 셋집(셋방)

7. 방 수

방이란 사방이 벽 또는 문으로 막혀 있으며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침실, 서재, 응접실, 한옥의 대청마루 등이 포함된다.

- 총 방 수 : 한개의 거처에서 주인가구(대표가구)만 작성한다.
- 사용방수 : 모든가구에서 작성하되 사용하고 있는 방수만 기입한다
 - * 다락은 방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고 사람이 실제로 기거하고 있는 경우에만 방으로 포함시키며, 단순히 물건만 쌓아 둔 경우에는 제외.

8. 난방시설

주된 난방시설이(1년을 기준으로)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기입하되 '5. 중앙난방'은 아파트일 경우에만 해당된다.

9. 취사연료

취사연료가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기입한다.

10. 내구소비재 보유현황

-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가의 내구소비재(승용차, 에어컨, 비디오, 피아노, 퍼스널 컴퓨터)를 파악한다【 단. 영업용일 경우에는 제외 】
- 다중선택 항목이므로 부호 기입시 첫 칼럼부터 보유하고 있는 내구소비재의 해당 번호를 차례로 기입하고 나머지 칼럼은 공란으로 둔다.

11. 주된 생활비

가구의 주된 생활비가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기입한다.

참조4. 소득구분

근로소득

가家主, 배우자 및 기타 가구원이 피고용자의 지위에서 근로의 댓가로 받은 일체의 현금 또는 현물보수를 말한다.

사업소득

가家主 또는 기타 가구원이 자영업주 또는 고용주의 지위에서 직접 사업을 경영하거나 전문적인 지식 또는 재능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 및 가내 부업에 종사함으로써 얻은 수입들 중 일체의 경비를 제외한 순수입을 말한다.

연금

매월 받고있는 연금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재산소득

토지, 가옥 및 순수한 축재 목적이나 계속적인 사업이 아닌 일시적 이익을 목적으로 구입 저장한 재산 등을 매각한 금액으로 생활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수증 및 보조

타 가구로 부터 받는 송금 및 생활보조금을 말한다.

기 타

상기 이외의 생활비로서 교제, 축의, 조의 등에 의해 받은 금액 또는 상금, 습득물의 매각대금 등을 말한다.

12. 조사구분

도시가계조사를 실시하는 조사구인 경우 해당조사구내 모든 대상가구에 대하여 『1』에 ○표시하고, 도시가계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조사구인 경우에는 해당조사구내 모든 대상가구에 대하여 『2』에 ○ 표시한다.

13. 경제활동 가구구분

①	②	③
---	---	---

①란 : 제외가구이면 1, 대상가구이면 2로 기재하되, ①란이 제외가구일 경우 ②, ③란은 공란 또는 ○○으로 처리한다.

②란 : 농가면 1, 비농가면 2로

③란 : 조사가구면 1, 불응가구면 2, 불능가구면 3으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14. 도시가계 가구구분

①	②
---	---

①란 : 12 조사구분란이 '1' 인 모든 가구에 대하여 기입하되, 봉급자,

노무자, 근로자외, 무직, 부적격가구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②란 : 대상제출이면 1, 대상 미제출이면 2, 대상구역 부적격이면 3, 대상외 가구는 4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15. 가계조사 부적격 사유

도시가계조사를 실시하는 조사구내의 대상가구중 부적격가구에만 부적격 사유를 기입한다.

참조5. 부적격 사유

- | | | | |
|-----------------------------|---------|----------------|--------------|
| 01. 농 가 | 02. 어 가 | 03. 단독가구 | 04. 음식, 숙박가구 |
| 05. 하숙업가구 | | 06. 부정기적 출타가구 | |
| 07. 2인이상 영업사용인과 숙식을 같이하는 가구 | | | |
| 08. 자취가구(비혈연) | | 09. 기타 분류 불능가구 | |

16. 미제출란

① ② ③

- 도시가계 가구구분의 2번째 컬럼이 '2' (대상 미제출)일 경우에 기입한다.

① - ② 란 : 미회수 사유

③ 란 : 월평균 추정소득 계층 구분

1 . . . 50만원 미만

2 . . . 50 - 100만원 미만

3 . . . 100 - 150만원 미만

- 4 . . . 150 - 200만원 미만
- 5 . . . 200 - 300만원 미만
- 6 . . . 300 - 500만원 미만
- 7 . . . 500만원 이상

- 가구의 월평균 추정소득: 1년동안의 가구의 총소득(상여금, 이자수입, 임대수입, 보조금, 포상금 포함)을 추정하여 12개월로 나눈 금액.

참조6. 미회수 사유

- | | |
|--------------|-----------------|
| 01. 주부 장기출타 | 09. 면접 거부 |
| 02. 주부 없음 | 10. 맞벌이 부부 |
| 03. 연로 및 연소 | 11. 남편실업으로 주부취업 |
| 04. 기재능력 부족 | 12. 남편부재로 주부취업 |
| 05. 관혼상제 | 13. 사생활 노출기피 |
| 06. 질병, 출산 | 14. 기타 가사사정 |
| 07. 분실, 자연재해 | 15. 일중 전출 |
| 08. 약속불이행 | 16. 일중 부적격 |

17. 주 소

그 가구에서 편지를 받을 수 있는 주소를 말하며 행정 동·읍·면 미만 단위의 주소만 기입한다.

18. 비 고

- 조사에 참고될 사항은 무엇이나 기입한다.
- 특히 전출년월, 전입거주지, 가구의 특성과 조사에 대한 응답태도를 기입토록 한다.

19. 번 호

- 가구원 번호로 가구원 수가 12인 이상일 때에는 가구표를 2매 이상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장의 번호는 12, 13, 14 - - - 등으로 수정하고 가구에 관한 사항은 부호만 기입하지 않는다.
- 특히 가구원이 전출했거나 사망한 경우에 가구원번호를 다시 수정해서는 안되며 일단 사용했던 가구원번호를 다시 사용해서도 안된다.
- 전출한 가구원이 다시 전입한 경우에도 종전의 가구원 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맨 마지막 번호를 준다.

20. 이 름

가구주와 가구원의 이름을 기입하되 가급적이면 가구주, 배우자, 미혼 자녀, 미혼형제 및 자매, 기혼자녀, 기혼 형제 및 자매와 그 가족, 부모, 친척, 동거인 순서로 기입한다.

참조7. 가구주의 정의

호적 및 주민등록상의 호주,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가구원 중에서 사실상의 생계책임자로서 소득이 많은 자를 말한다. (각 조사별로 가구주의 선정이 달라질 경우에는 도시가계조사의 가구주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참조8. 가구원의 정의

가구원이란 함께 살고 있는 가구의 구성원을 말하며, 혈연관계와 관계없이 상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참조9. 상주하는 사람

상주하는 사람의 정의

상주하는 사람이란 조사당시 조사구역에 생활의 본거지를 갖고 같이 사는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다음의 경우에는 상주하는 사람이 된다.

- 조사당시 조사구내에서 살고 있는 사람
- 조사구내에 살고 있으면서 조사당시 일시적으로 밖에나가 있는 사람 즉, 친척방문 출장, 사업상 여행중인 사람
- 가족은 다른 데(조사구 밖)에 있으나 거의 대부분의 날자를 그 조사구내에서 보내고 있는 사람 즉, 방학동안에만 자기집에 가있고 학교는 그 조사구내에서 다니면서 가끔 자기집에 들르러 가곤하는 사람
- 일정한 주거가 없으면서 조사당시 조사구내에서 발견된 사람 즉, 일정한 처처가 없는 노동자, 걸인 등과 그의 가족
- 영외에 거주하는 현역군인

<특히 유의하여야 할 경우>

- * 장기간 집을 떠나 다른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중 선박 승무원, 항공기탑승원, 병원에 입원중인 사람들은 상주개념에 관계없이 가구원으로 간주한다.

- * 외국인, 영내에 거주하는 군인, 교도소 수감자는 가구원으로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 * 다른 곳에서 사업을 하다 실패하여 부모님도 뵈을겸하여 당분간 와있는 사람중(본인들은 곧 간다고 할 경우) 다음달에도 여전히 그 곳에 살고 있으면 가구원으로 조사한다.
- * 직장에 다니다가 그 직장이 문을 닫아 당분간 와 있는 사람중 그 다음 달에도 그 곳에 살고 있으면 가구원으로 조사한다.
- * 아들들이 번갈아 가며 부모님을 모시기로 하여 이번에는 이 조사구내의 아들 차례여서 부모님이 오셨을 경우 그 가구원으로 조사한다.
- * 학교에 다니거나 농사를 짓다가 무작정 집을 나간 사람중 (부모들은 곧 올거라고 얘기함) 다음 달에도 오지 않았으면 전출로 처리한다.

21. 가구주와의 관계

- 가구주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알기 쉬운 말로 간단히 기입한다.
즉 가구주, 처, 차남, 차녀, 장남, 장남의 처, 장남의 장남, 부모, 고모의 장녀, 가정부(식모), 하숙인, 점원, 고용인 등

22. 성 별

- 성별에 따라 1. 남 또는 2. 여와 같이 기입한다.

- 갓 태어난 아기의 경우 성별 묻는 것을 꺼려하므로 질문하는데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23. 생년월일

호적과는 관계없이 실제로 출생한 생년월일을 기입한다. 실제로 출생한 생년월일을 알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 순서를 밟는다.

1. 생일은 언제입니까?
2. 양력입니까? 음력입니까?
3. 몇 살입니까? 띠는 무엇입니까?

로 질문한 후 음력의 경우는 양음력 환산표를 보고 양력으로 환산하여 기입하고 나이와 띠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띠』를 중심으로 기입하여야 한다.

24. 학 력

주간·야간을 구분하지 않고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각급 정규교육(각종 특수학교 포함)을 말한다. 단, 입시를 위한 학원과 타자, 경리, 부기및 운전기술학원등은 정규교육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참조10. 교육정도

정규교육

- 국민학교(공민학교 포함)
- 중학교(고등공민학교 포함)

- 고등학교(구제중학교【5년제】 및 방송통신고, 전수학교 포함)
- 초급·전문대학
- 대학교(각급 사관학교, 신학교 및 방송통신대학 포함)
- 검정고시 합격자
 - 중입 검정고시 합격 → 국졸로 인정
 - 고입 검정고시 합격 → 중졸로 인정
 - 대입 검정고시 합격 → 고졸로 인정
- 독학사 학위취득자 → 대졸로 인정
- 대학원 이상은 석사학위 과정이상

- 평생교육원 및 독학사 학위취득·검정고시 시험준비중인 것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의 재학, 중퇴, 졸업을 나타내도록 기입한다.
 - 예 : 『국2년재』, 『국졸』, 『중2년재』, 『고3년중퇴』, 『대4년재』 등
- 연령미달로 미취학의 경우에는 『미취』, 기타 연령이 지났으나 학교를 안다닌 경우에는 『무학』으로 기입한다.
- 특히 유의할 사항은 중퇴의 경우나 재학의 경우 몇년 중퇴 및 재학인가를 반드시 기입하여야 한다.

--	--	--

가 나 다

가. 학교구분

1. 국민학교 2. 중학교 3. 고등학교 4. 초대 및 전문대
5. 대학(교) 6. 대학원이상

나. 학교별 이수년수

1. 1학년 2. 2학년 3. 3학년 4. 4학년
5. 5학년 6. 6학년

다. 재학여부

1. 졸업 2. 재학 3. 중퇴

* 단, 무학 및 미취학인 경우에는 000을 기입

25. 배우관계

호적 또는 주민등록과는 관계없이 사실상의 배우관계를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으로 분류하여 기입한다.

1. 미혼 : 혼인한 경험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2. 유배우: 혼인하여 배우자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내연의 관계가 있는 사람도 포함하며, 2명 이상의 처를 거느리고 경우에도 유배우에 해당한다.
3. 사별 : 혼인을 한사람으로서 배우자의 한쪽이 사망하여 현재 독신으로 있는 경우로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별로 취급, 해방전 또는 한국동란 당시 배우자가 납치 또는 실종된 사람은 사망으로 간주한다.
4. 이혼 : 혼인을 한사람들의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현재 독신으로 있는 경우로 재결합이 예상되지 않는 별거도 포함된다.

참조10. 사실혼

사실혼이란 가정을 구성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어야 하며 동거 등으로 객관적인 표시가 있어야 한다.

- 법적으로 이혼은 성립되지 않았으나 배우자와 영원히 살지 않을 것이 확정되어 별거하고 있는 사람은 이혼으로 간주한다.
- 두번 이상 결혼한 경우 최종상태를 배우관계로 한다.
즉 초혼에 실패(이혼, 사별)하고 재혼하였으나 사별(이혼)하여 현재 홀로 있으면 사별(이혼)에 해당된다.

26. 초혼년월

- 모든 기혼남자 및 여자에 대하여 첫 결혼년도 및 월을 조사 기입한다
- 초혼년도는 기억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므로 먼저 초혼 당시의 연령을 물어 다음 방식으로 계산하고 음력월은 양력으로 환산하도록 한다.
- 사실혼의 경우 동거시작 년월을 기입한다.

[예 1]

출생년월일 : 1941년 6월 18일

초혼 연령 : 23세 음 11월 30일(세는 나이)

1941
+ 22

1963

초혼년월 : 1964년 1월 14일

이 경우 양, 음력환산표 1963년을 보고 음력 11월 30일을 찾으면 다음 해로 넘어감을 알 수 있다.

[예 2]

출생년월일 : 1924년 11월 23일

초혼 연령 : 19세 음 3월 15일(세는 나이)

1924
+ 18

1942

초혼년월 : 1942년 4월 29일

양, 음력환산표 1942년에서 음력 3월 15일을 양력으로 환산하면 1942년 4월 29일이 된다.

- * 초혼년월 계산은 초혼일자가 생일을 지났는지 여부와는 관계없고 다만 생일이 음력일 경우 양력으로 환산해서 똑같은 연도일 때는 1만 빼준다. (다음해로 넘어갔을 때는 나이를 그냥 더한다.)

27. 이상자녀

- 이 란은 출산 패턴을 파악하기 위한 항목으로 가임 유배우 여성에게만 묻는다. 『귀댁에서는 총 몇 명의 자녀를 갖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와 같이 묻고 두란중 앞란에 남아수를 뒷란에 여아수를 기입한다.
- 애매한 응답을 하는 경우 『그러면 현재의 상태에서는 몇 명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재차 물어 응답을 얻어낸다.
- 남녀를 구분하지 않는 경우는 '9' CODE를 사용함. 따라서 남녀를 불문

하고 1명인 경우는 '91', 2명인 경우는 '92', 3명이상인 경우는 '99'로 부호를 기입한다.

28. 임신여부

- 임신가능 연령(15 ~ 49세)에 해당하는 부인에게 임신여부를 물어 임신중인 것이 확인되었을 때는 임신된 년월을 조사하여 기입한다.
- 그 임신이 끝났을 경우에도 변동보고서 ⑦ 임신결과란을 이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 미혼인 경우에도 임신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조사를 하여야 하며, 사실 응답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하여 조사한다.

29. 총 출생아

- 15세 이상 기혼(배우자 있음, 사별, 이혼) 여자에게만 묻는다.
- 총 출생아수는 출산력을 파악하기 위한 항목으로 사망자녀를 포함한 총 출생아수가 10명 이상일 경우에는 사실대로 적고 부호는 9명으로 기입한다.
- * (단, 입양해 온 자녀(양자, 양녀)와 현재 남편의 전부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제외)

30. 전입일자

- 가구 또는 가구원이 실제로 전입한 일자를 기입한다.
- 주의할 사항은 전입누락을 2개월 후에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발견된

일자가 아니고 실제로 전입한 일자를 기입한다.

31. 경활상태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침에 준하여 제외, 취업, 실업, 비경활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매월 변동보고서로 보고한다.

32. 비 고

가구원 변동이 있을 경우, 해당 가구원에 대한 특이한 사항 및 수정이 필요한 경우 등을 함께 기입하며 주로 전출년월일과 목적지를 기입한다.

다. 가구명부

조사구, 구역, 거처, 가구번호, 가구주이름, 가구주산업, 직업, 가구구분, 가구원수, 취업자수, 전입·전출년월 등을 파악하여 작성하며 가구상에 전입 전출 착오 누락 분가 통합 등의 변동사항 발생 시 마지막줄 다음에 계속하여 기입한다.

이때 가구구분란은 도시가계조사 실시 조사구만 기입한다.

(1) 조사구번호

해당조사구의 고유번호를 기입한다.

(2) 구역 및 거처 · 가구번호

가구에 부여된 번호를 기입한다.

(3) 가구주이름 · 산업 · 직업

가구주의 이름 · 산업 · 직업을 기입하고, 산업 · 직업분류는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준하며 작성하되, 산업 · 직업명과 코드를 같이 기입한다.

(4) 가구구분

가구주 직업을 기준으로 봉 노 외 무 부 가구로 구분하여 적고 부적 격인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를 부적격 사유란에 코드로 기입한다.

이 란은 도시가계 조사구만 작성하며, 경제활동만 조사하는 조사구 는 사선을 한다.

(5) 가구원수 · 취업자수

가구내 가구원수 및 취업자수를 기입한다.

(6) 전입 · 전출년월

가구의 조사구내 전입일자 및 전출일자를 기입한다. 착오로 전입을 늦게 파악한 경우에는 실제 전입날자를 기입한다.

(7) 담당자

조사담당자의 직급 및 성명을 기입하고 날인한다.

라. 변동사항 종합표

매월 변동보고서의 3란과 4란의 내용을 그대로 기입한다.

마. 변동보고서

(1) 난외사항

- 일련번호 :

--	--	--	--	--

가구표 일련번호 작성요령과 동일.

- 조사년월 :

--	--	--

년 1자리와 해당월 2자리를 기입한다.

1. 조사구번호

조사구번호를 7단위로 기입한다.

2. 가구표 정리

· 조사담당

조사담당자가 조사표류(가구표, 변동보고서)를 다시 한 번 검토하여 기입내용을 확인한 후 그 일자를 기입하고 이름을 기입한다.

· 과장

조사담당자는 기입하지 않고 담당과장이 확인 날인한다.

3. 현 황

· 전월가구

전월 변동보고서 제출당시 가구수를 기입한다. 즉 전월 변동보고서

3란의 금월가구수가 전월의 가구수가 된다.

- 증가가구

전월 변동보고서 제출후의 증가 가구수를 기입한다. 즉 5란의 가구수를 기입한다.

- 감소가구

전월 변동보고서 제출후의 감소 가구수를 기입한다. 즉 14란의 가구수를 기입한다.

- 금월가구 = 전월가구 + 증가 - 감소

변동보고서 제출시의 가구수를 기입한다.

- 전월인구

전월 변동보고서 제출당시 인구수를 기입한다. 즉 전월 변동보고서 3란의 금월인구수가 전월의 인구수가 된다.

- 증가인구 = 변동보고서(6란 + 23란)

전월 변동보고서 제출후의 증가 인구수를 기입한다.

- 감소인구 = 변동보고서(15란 + 40란)

전월 변동보고서 제출후의 감소 인구수를 기입한다.

- 금월인구 = 전월인구 + 증가인구 - 감소인구

변동보고서 제출시의 인구수를 기입한다.

금월인구수는 변동사항 종합표상의 인구수와 일치하여야 한다.

4. 출생. 사망

3란 현황과는 별도로 출생과 사망건수(누락건 포함)를 윗쪽란에 기입

한다. 단, 출생과 사망의 누락분에 대해서는 아래 『○○월 출생누락
○전』 등과 같이 기입한다.

(2) 난내사항

1. 가구증가(5란부터 13란)

- 전입가구, 전입누락가구, 착오가구의 경우에는 7란부터 9란까지 가구표의 내용을 그대로 기입하고 5란은 증가된 총 가구수, 6란에는 이들 가구의 총 가구원수(9란의 합계)를 기입한다.
- 11란 가구의 전입 및 누락의 경우,
 $\frac{\text{○}}{\text{이동종류}}$ $\frac{\text{○○}}{\text{시·도}}$ $\frac{\text{○○○}}{\text{구·시·군}}$ 코드를 기입하며 12란 이동사유
 는 상세히 기입하되 해당코드를 반드시 기입한다.
- 13란 구분에는 전입, 전입누락, 착오를 변동이유로 기입한다.
 단, 가구전입의 경우 가구원의 이전 거주지가 서로 다를 경우 이를 특기사항란에 일일이 기입한다.
- 조사구역내에서 1가구가 2가구로 되었을 때에는 분가된 가구수를 하단 『분가 가구수』에 기입하고 5란 총 증가 가구수에 합산하여 준다.
- 착오가구는 11란, 12란을 사선 『\』 한다.

2. 가구감소(14란부터 22란)

- 전출가구, 전출누락가구, 착오가구의 경우에는 16, 17, 18란에 가

구표의 내용을 그대로 기입하고 14란은 감소된 총 가구수 15란에는 이들 가구의 총 가구원수(18란의 합계)를 기입한다.

- 20란 가구의 전입 및 누락의 경우,

$\frac{\text{○}}{\text{이동종류}}$ $\frac{\text{○○}}{\text{시·도}}$ $\frac{\text{○○○}}{\text{구·시·군}}$ 코드를 기입한다.

는 상세히 기입하되 해당코드를 반드시 기입한다.

- 21란 이동사유는 상세히 기입한다. 가구전체가 전출하였으나 그 목적지가 가구원별로 다를 경우 다음과 같이 특기사항란에 각각 기입한다.

예 : 『○번 가구원은 ○○도 ○○○구, 시, 군으로』 『○번 가구원은 ○○도 ○○○구, 시, 군으로』

- 조사구내의 2가구가 한 가구로 통합되었을 때에는 하단에 『통합된 가구수』를 기입하고 14란에 감소된 가구수를 합산하여 준다.
- 착오가구 및 단독가구원 사망일 경우에는 20란, 21란을 사선한다.

3. 가구원의 증가(23란부터 40란)

- 가구원의 전입, 전입누락, 착오, 출생 등은 가구원의 증가요인이 된다.

이때에는 가구표의 정리를 위해 24란부터 35란 및 37 - 40란까지 가구표 작성요령으로 기입한다.

- 23란은 하단에 기입된 가구원수를 모두 합해서 기입한다.
- 출생 및 착오가구원은 38란, 39란을 사선한다.

4. 가구원의 감소(41란부터 48란)

- 가구원의 전출, 전출누락, 착오, 사망 등은 가구원의 감소요인이 되므로 이 때에는 『4 가구원 감소』의 각 란에 가구감소와 같은 요령으로 기입한다.
- 사망 및 착오가구원은 46란, 47란을 사선한다.

5. 가구표 수정요구 사항(49란부터 52란)

- 가구표의 내용을 수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가구번호, 가구원번호를 49 및 50란에 기입하고 51란은 수정하여야 할 가구표의 항목번호를 기입하고, 52 수정내용에는 수정할 내용을 기입한다.
- 단, 부호의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변동전과 변동후의 내용만 기재하고 부호는 기입하지 않는다(예시참조)

기입 예:

예	49 가구번호	50 가구원번호	51 가구표란번호	52 수정내용	
				수정전내용	수정후내용
· 01-05-01-02 가구 2번 가구원 임희순의 생년월일 1937. 2. 15 →1927. 2. 15	01-05-01-02	02	14	1937. 2. 15	1927. 2. 15
* 49 - 52란 부호기입을 하여야 함.					

예	49 가구번호	50	51	52 수정내용	
		가구원 번호	가구표 란 번호	수정전 내용	수정후 내용
· 12-06-02-01 가구 6번 가구원 김철성의 가구주와의 관계 4남 → 점원	12-06-02-01	06	12	4 남	점원
* 49 - 52란 부호기입을 하여야 함.					
· 11-06-03-02 가구 3번 가구원 김영석의 학력난이 중졸 → 고1재	11-06-03-02	03	15	중졸	고1재
* 49 - 52란 부호기입을 하여야 함.					
· 02-20-02-01 가구 가구주의 이름이 김병석 →김영식	02-20-02-01	01	11	김병석	김영식
* 49 - 52란 부호기입을 하지 않음.					

- 가구표를 수정할 때 가구표의 1란(조사구번호) ~ 4란(가구번호) 및 19란(가구원번호)는 본 란에 수정 요구할 수 없다.
- 다만, 가구표의 2란 ~ 4란을 수정코자 할 경우는 『6 조사구내 이동』 중 가구이동을 이용하여 2란 ~ 4란을 한데 묶어 수정할 수 있으며, 1란 및 19란은 별도로 조사관리과와 협의하여야 한다.

6. 동일조사구내 이동

(가) 분 가

- 어떤 가구의 가구원 일부가 동일 조사구의 조사 구역내에서 한 가구를 형성하여 분가했을 때에는 『53 구분』란에 분가라고 기

- 입하고 54란, 55란은 이동하기 전의 가구번호, 가구원번호를 기입하고 56란, 57란은 이동후의 가구번호, 가구원번호를 기입한다
- 『58 이동후 가구주와의 관계』, 『59 이동후 거처의 종류』, 『60 이동후 주택소유 관계』란은 이동한 후의 상태를 기입하고, 『61 이동후 배우관계』, 『62 초혼년월』란은 이동후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기입토록 한다. (물론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상태를 기입한다)
 - 동일 조사구내에서 가구가 분가하여 한 가구가 증가했을 경우에는 그 분가한 가구를 『1 가구증가』의 하단의 『조사구내의 분가 가구』란에 기입하고 5란 “가구증가”에 합산하여 준다.
 - 분가가구는 새로운 가구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나) 통 합

- 동일 조사구의 조사대상 구역내에서 2가구가 1가구로 통합하였을 때에는 『6 조사구내 이동』란에서 『53 구분』란에 통합이라 기입하고 『54 이동전 가구번호』, 『55 이동전 가구원번호』, 『56 이동후 가구원번호』, 『58 이동후 가구주와의 관계』, 『59 이동후 거처의 종류』, 『60 이동후 소유관계』, 『61 이동후 배우관계』, 『62 초혼년월』을 분가의 경우와 같이 기입한다.
- 동일 조사구내에서 2가구가 1가구로 통합되어 한 가구가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통합된 가구수를 『2 가구감소』하단의 『조사구내의 통합가구』란에 기입하고 『14』란 총가구 감소수에 합산하여 준다.
- 통합가구의 경우 가구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다.

(다) 이 동

- 동일 조사구의 조사대상 구역내에서 이동가구가 있을 때에도 『6 조사구내 이동』란에 기입한다. 『53 구분』란에는 “가구이동”이라 기입하고 『54 이동전 가구번호』, 『56 이동후 가구번호』만 기입하고 나머지 항목은 사선을 한다.
- 그리고 이동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보고서 『5 가구표 수정요구사항』에 기재한다.
- 동일 조사구내 가구이동은 가구증감에 관계가 없으므로 별도 기입하는 곳이 없으며 가구표도 작성하지 않으나 가구표상의 가구번호를 두 줄로 긋고 이동후의 가구번호를 기입한다.
- 동일 조사구의 조사대상 구역내에서 가구원이 다른 가구의 가구원으로 이동하였을 때에는 『53 구분』란에는 “가구원이동”이라 기입하고 『54 이동전 가구번호』, 『55 이동전 가구원번호』, 『56 이동후 가구번호』, 『57 이동후 가구원번호』, 『58 이동후 가구주와의 관계』, 『59 이동후 거처의 종류』, 『60 이동후 주택 소유관계』, 『61 이동후 배우관계』, 『62 초혼년월』을 분가의 경우와 같이 기입한다.

『예』 (6) 조사구내 이동(가구이동, 가구원이동, 분가, 통합)

53 구 분	54 이동 전 가 번 호	55 이동 전 가 구 원 번 호	56 이동 후 가 번 호	57 이동 후 가 구 원 번 호	58 이동 후 가 구 주 와 의 관 계	59 이동 후 거 처 의 종 류	60 이동 후 주 택 소 유 관 계	61 이동 후 배 우 관 계	62 이동 후 초 혼 년 월
가구이동	01020101	＼	01060201	＼	＼	＼	＼	＼	＼

53 구 분	54 이동 전 가 구 번 호	55 이동 전 가 구 번 호	56 이동 후 가 구 번 호	57 이동 후 가 구 번 호	58 이동 후 가 구 주 와 의 계 관	59 이동 후 이 거 처 종 류	60 이동 후 이 주 소 관 택 유 계	61 이동 후 이 배 관 우 계	62 이동 후 이 초 년 혼 월
분 가	11040101	03	11020202	01	가구주	단 주 독 택	전 세	유배우	79.4
분 가	11040101	07	11020202	02	처	단 주 독 택	전 세	유배우	79.4
통 합	01090102	01	01020101	05	장남	단 주 독 택	자 가	유배우	80.3
통 합	01090102	02	01020101	06	장남의 처	단 주 독 택	자 가	유배우	80.3
가 구 원 이 동	11100302	08	11050101	06	장남	단 주 독 택	자 가	미 혼	\
분 가	11200101	04	11120402	01	가구주	단 주 독 택	전 세	유배우	78.4

7. 임신기록 및 결과(63란부터 67란)

- 기혼부인중 가입여성(15세 ~ 49세)에 대하여 임신여부를 물어 임신
중임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63 가구번호, 64 가구원번호, 65 부인이
름, 66 임신여부를 기입하고 67 결과란은 사선을 친다.
- 임신이 끝났을 때는(정상출산, 중절, 사산, 기타) 63 가구번호,
64 가구원번호, 65 부인이름, 67 결과란을 기입하고, 66 임신여부
란은 사선을 친다.
- 68 비고란에는 중절이나 사산된(몇 개월만에 중절, 사산되었나?)

개월수 및 기타의 경우 구체적인 사례(상상임신, 특수한 병으로 인한 것을 임신으로 오판 등)를 기입토록 한다. 특히 사산에 대해서는 출생즉시 사망했는가의 여부를 응답자에게 재확인하여 영아 사망과 사산을 정확히 구분토록 하여야 한다.

- 전입과 출생이 같은 조사대상 기간인 것은 임신기록란에 기입하지 않는다.

- 참고사항

· 출생 : 인구동태표본조사 지침서 참조

· 중절 : 출생전 태아를 인공적으로 제거시키는 경우

· 사산 : 태아가 모체에서 사망한 상태로 분만되는 경우

3. 변동사항별 기본자료 작성요령

- 매월 조사대상 가구의 변동사항에 따라 가구표 및 변동보고서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정 보완한다.

- 가구명부도 가구표에 준해서 함께 수정 보완해야 한다.

가. 조사대상 가구상의 변동사항 발생시

기존조사 대상가구에 전입 전출 분가 통합 등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내용에 따라 변동보고서 가구표 가구명부를 다음과 같이 작성 보완한다.

(1) 전입가구가 있을 때

- 지난달 변동사항 확인 후에 전입한 가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변동

보고서 『1. 가구증가』란에 기입하고, 가구표를 작성하고, 가구명부를 보완한다.

(2) 전출가구가 있을 때

- 지난달 변동사항 확인 후에 전출한 가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변동보고서 『2. 가구감소』란에 기입하고, 가구표 좌측상단에서 우측하단으로 붉은 색을 사용하여 『\』을 긋고, 18 비고란에 전출년월일과 목적지를 기입한다. 각 가구원별로 목적지가 다른 경우 32란에 같은 방법으로 기입한다.

(3) 누락가구가 있을 때

- 전입누락인 경우는 전입가구에 준하여 처리하되, 변동보고서 13 구분란과 가구명부 비고란에 전입누락으로 기입한다.
- 전출누락인 경우는 전출가구에 준하여 처리하며, 단 변동보고서 22 구분란과 가구명부 비고란에는 전출누락으로 기입한다.
- 전출 전입누락가구 처리시 전출 전입날자는 반드시 실제날자를 기입하여야 한다.

(4) 착오가구가 있을 때

- 착오로 인하여 없는 가구의 가구표를 작성하였을 때는 전출가구와 동일하게 처리하고 가구표 18란 비고에 변동보고를 한 년월을 기입하고, 변동보고서 22 구분란과 가구명부 비고란에 착오로 기입한다. 착오로 인하여 있어야 할 가구의 가구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는 가구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가구번호 순서대로 철하고 1부는 조사표류와 함께 사무소에 제출한다.

(5) 동일 조사지역내에서 이동한 가구가 있을 때

- 가구표상 기존 가구번호에 두 줄을 긋고 새 가구번호를 기입한 다음 18 비고란에 『동일 조사구내 이동 : ○○○○-○○-○○에서 ○○○○-○○-○○로』라 기입하고, 변동보고서 『6. 조사구내 이동』란에 기입하고 가구명부를 수정한다.

(6) 어떤 가구에서 분가된 가구가 있을 때

- 조사대상가구의 가구원 일부가 한 가구를 형성하여 동일 조사구내로 분가를 했을 때에는 분가되어 나간 가구원은 가구표 32란에 『○○○○-○○-○○번 가구로』라고 기입하고, 변동보고서 『1. 가구증가』란과 『6. 조사구내 이동』란에 해당사항을 기입하고, 분가가구에 대한 가구표를 작성하고, 가구명부를 수정 보완한다. 이때, 분가가구 가구표 『○○○○-○○-○○ 가구에서 분가』라 기입한다.

(7) 조사구내의 2가구가 통합되어 1가구로 되었을 때

- 통합을 위하여 전출한 가구는 변동보고서 『2. 가구감소』란과 『6. 조사구내 이동』란에 해당사항을 기입한다. 이때 통합을 위하여 전출한 가구의 가구표 18 비고란에는 『○○○○-○○-○○번 가구에서 통합 전입』이라 기입한다.

(8) 기타 가구상의 변동발생시

- 가구 전입 및 전출이외의 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가구표를 수정하고 가구명부상의 변동사항을 보완하며 변동보고서 『5. 가구표 수정요구사항』란에 해당사항을 기입한다.

나. 기존조사대상 가구원 상의 변동사항 발생시

조사대상 가구원상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내용에 따라 가구표 변동 보고서 가구명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보완 한다.

(1) 전입가구원이 있을 때

- 전입가구 가구표 빈란에 가구원번호와 해당사항을 기입하고 가구명 부상에 해당사항을 보완하고 변동보고서 『3. 가구원 증가』란에 해당사항을 기입한다. 그리고 가구표 32 비고란에 『○○도 ○○○시 에서 전입(전입년월일)』이라 기입한다.

(2) 전출가구원이 있을 때

- 가구표상의 해당가구원의 가구원 번호위에 사선을 긋고, 가구명부의 해당사항을 보완하고 변동보고서 『4. 가구원 감소』란에 해당사항을 기입한다. 그리고 가구표 32 비고란에 『○○도 ○○○시로 전출(전출년월일)』이라 기입한다.

(3) 누락가구원이 있을 때

- 전입누락 가구원의 경우 전입가구원과 같이 처리하되 가구표 32란에 『년. 월 전입누락 보완』이라 기입한다.
- 전출누락 가구원의 경우 전출가구원과 같이 처리하되 가구표 32란에 『년. 월 전입누락 보완』이라 기입한다.

(4) 착오가구원이 있을 때

- 착오로 인하여 그 가구의 가구원이 될 수 없는데도 가구표에 기입되었을 때에는 전출가구원과 같이 처리하되 가구표 32란에 『년. 월

착오보완』이라 기입한다.

- 착오로 인하여 원래부터 그 가구에 있던 사람을 가구원으로 조사하지 않았을 때는 전입가구원과 같이 처리하되 가구표 32란에 『년. 월 착오보완』이라 기입한다.

(5) 출생아가 있을 때

- 전입가구원과 동일하게 처리하고, 변동보고서 32란부터 38란 및 39란은 사선 『\』을 한다. 40란 구분란에 “출생”이라 기입한다.

(6) 사망자가 있을 때

- 전출가구원과 동일하게 처리하고, 변동보고서 46란 및 47란은 사선 『\』을 한다. 48란에 “사망”이라 기입한다.

(7) 출생후 사망아가 있을 때

- 지난달 변동사항 확인전이나 이후에 출생하였다가 사망한 경우를 금월 변동사항 확인시에 알아냈을 때에는 우선 출생으로 간주하여 변동보고서 『3. 가구원증가』에 기입하고 다시 『4. 가구원감소』에 사망으로 처리한다.

(8) 누락후 사망자가 있을 때

- 지난달 변동사항 확인이전에 가구원이 전입하였다가 사망한 경우를 금월 변동사항 확인시에 알아냈을 때에는 우선 누락으로 간주하여 변동보고서 『3. 가구원증가』에 기입하고 다시 『4. 가구원감소』란에 사망으로 처리한다.

(9) 전입후 사망자가 있을 때

- 지난달 변동사항 확인후에 가구원이 전입하였다가 사망한 경우를

금월 변동사항 확인시에 알아냈을 때에는 우선 전입으로 간주하여 변동보고서 『3. 가구원증가』에 기입하고 다시 『4. 가구원감소』란에 사망으로 처리한다.

(10) 전입전 거주지에서 출생자가 있을 때

- 전입전 거주지에서 출생한 경우를 금월 변동사항 확인시에 알아냈을 때에는 출생조사표를 제출하고 전입으로 처리한다.

(11) 전입전 거주지에서 사망자가 있을 때

- 전입전 거주지에서 사망한 가구원이 있었던 전입가구의 경우를 금월 변동사항 확인시에 알아냈을 때에는 전입한 후 사망한 것으로 처리한다.

이 때에는 비록 전입전 거주지에서 사망하였으나, 전입가구원과 같은 요령으로 가구표의 19란부터 32란까지 기입한다. (전입가구표 제출시 변동보고서 『3 가구원증가』란에 중복 기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12) 기타 가구원사항에 변동사항 발생시

- 기타 가구원에 관한 사항중 변동이 발생하였거나 수정을 요할 경우 가구표를 수정하고, 가구명부 해당사항을 보완하고, 변동보고서 『5. 가구표 수정요구사항』란에 해당사항을 기입한다.

Ⅲ. 조사포류의 내용검토 및 제출

Ⅲ. 조사표류의 내용검토 및 제출

1. 내용검토 지침

가. 가구표

- (1) 각 항목마다 기입상 누락 또는 오기가 없는가 확인한다.
- (2) 생년월일이 양력으로 환산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3) 생년월일과 초혼년월을 대조하여 만15세 미만일 경우 재확인한다.
- (4) 모의 연령과 첫째 자녀와의 생년월일을 대조하여 연령차이가 만 15세 미만일 경우 재확인한다.
- (5) 생년월일과 학력을 비교하여 맞게 기재되어 있는가 확인하고 중2년 재, 국3년퇴 등과 같이 몇년 재학 및 중퇴 등 구체적으로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6) 각 자녀들간의 터울은 적어도 10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입양, 쌍둥이 제외)
- (7) 배우관계가 '미혼' 이 아닐 경우 반드시 초혼년월이 기재되어야 한다.
- (8) 부부간의 나이 차이가 심할 때는 재혼여부를 확인하고 재혼일 경우 부부의 초혼년월은 각각 달라야 한다.
- (9) 조사시점과 초혼년월을 대조하여 보고 어린 아이가 없거나, 마지막 아이 이후(2명 이내일 때) 1년이상 경과한 부인에게는 임신여부를 재확인 하여야 한다.

나. 변동보고서

- (1) 1항 - 7항의 각 항목마다 기입누락 및 오기가 없는가 확인하여야 한다.
- (2) '㉓현황'에서 전월란의 숫자가 전월 변동보고서상의 금월 가구수 및 인구수와 동일한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3) '㉓현황'란의 기입이 맞게 되었는가 확인한다.
(전월 + 증가 - 감소 = 금월이 되어야 하는데 가끔씩 틀리는 경우가 있음.)
- (4) '1 가구 증가', '2 가구 감소', '3 가구원 증가', '4 가구원 감소'란에서 실제 기입된 내용과 합계된 숫자가 일치 하는가 확인한다.
- (5) '1 가구 증가' 및 '2 가구 감소'일 경우 가구표상의 가구번호와 변동보고서상의 가구번호가 일치하는가 확인하여야 한다.
- (6) '3 가구원 증가'에서 가구표철과 비교하여 가구원번호가 순서에 맞게 기입되었는가 확인한다.
- (7) '4 가구원 감소'에서 전출한 가구원의 번호가 실제 가구표상의 기입된 번호와 일치하는가 확인한다.
- (8) '5 가구표 수정요구사항'은 주소 및 이름까지도 수정 요구되어야 한다. (CRT 활용 일환)
- (9) '6 조사구내 이동'에서 가구가 이동되어 가구번호가 변경되었을 때는 이동후 가구번호로 기입되었는가 보고 만약 이동전 가구번호로 기입되어 있으면 반드시 이동후 가구번호로 고쳐주어야 한다.

- (10) ‘7 임신기록 및 결과’란은 임신중인 모든 임신부인과 임신했다가 임신이 끝난 부인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는가 확인하여야 한다.
 ‘3 가구원증가’에서 ‘40 구분’이 출생이나 출생누락일 경우에는 ‘7 임신기록 및 결과’에 반드시 기입하여야 한다. (단, 전입과 동시에 출생일 경우는 ‘7 임신기록 및 결과’에 기입하지 않는다.)

다. 인구동태 표본조사표와 변동보고서 대조검토

- (1) 변동보고서 ‘1 가구 증가’에서 첨부된 가구표를 보고 가구원중에서 생년월일이 전입년월과 같은 조사대상 기간에 속하는 가구원이 있으면 ‘출생조사표’가 제출되었는가 확인한다.
- (2) ‘1 가구 증가’나 ‘3 가구원 증가’에 이동사유가 혼인이라고 기입되어 있으면 ‘혼인조사표’가 제출되었는가 확인한다.
- (3) ‘2 가구 감소(단독가구)’나 ‘4 가구원 감소’에서 구분란이 사망(사망누락)이면 ‘사망조사표’가 제출되었는가 확인한다.
- (4) ‘3 가구원 증가’에서 구분란(40란)이 출생(출생누락)이면 ‘출생조사표’가 제출되었는가 확인한다.
- (5) ‘출생조사표’가 제출된 것은 모두 변동보고서 ‘7 임신기록 및 결과’에 기재되었는가 확인한다.
 (단, 전입과 출생이 같은 달에 발생한 것은 제외함)
- (6) 조사표 ‘2 사망’에서 ‘10 혼인상태’가 유배우인 사람의 배우자에 대해 변동보고서 ‘5 가구표 수정요구사항’에 배우관계를 유배우 → 사별로 수정 요구하였는가 확인한다.

- (7) 혼인조사표에 가구원번호가 한쪽만 기입되어 있거나(이 경우는 혼인만 하고 따로 떨어져 있는 부부임), 혼인해서 그 조사구에 계속 살 경우(이 때에는 상대방만이 '3 가구원 전입'으로 들어옴)에는 '5 가구표 수정요구사항'에 배우관계를 미혼 → 유배우로 수정요구하였는가 확인한다.
- (8) 이혼하여 한 사람만 전출한 경우('4 가구원 감소' 이동사유란에 이혼으로 기입된 경우) 그 배우자에 대해 '5 가구표 수정요구사항'에 배우관계를 유배우 → 이혼으로 수정요구 하였는가 확인한다.

라. 인구동태표본조사표와 가구표 대조 검토

우선 조사구번호 및 가구번호를 보고 해당 가구표를 찾아서

- (1) '1 출생'에서 모의 가구원번호 및 교육정도가 가구표상의 기입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2) '1 출생'에서 출산당시 모의 연령이 바르게 계산되었는지 확인한다.
(인구동태 지침서 P18 '출산당시의 모의 연령' 환산방법 참조)
- (3) '1 출생'에서 출산순위는 가구표에 기입된 자녀수에 1을 더한 숫자이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남아서 잃은 아이가 있을 경우)
- (4) '2 사망'에서 사망자의 생년월일 및 교육정도, 혼인상태가 가구표에 기입된 것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5) '3 혼인'에서 부부의 연령계산이 바르게 되었는지 확인한다.
('1 출생'에서 '출산당시의 모의 연령' 환산방법과 같으므로 지침서를 참조할 것)

2. 조사표류의 제출

가. 제출상의 유의점

- 제출할 조사표류중에 빠진 것이 없는가를 재확인한다.
- 지정된 기일내에 조사표류를 제출토록 한다.
 - 경제활동인구조사 : 매월 12일까지
 - 도시가계조사: 매월 23일까지

나. 제출할 조사표류

- 변동보고서(2부 작성 사무소에 1부 보관)
- 가 구 표(2부 작성 사무소에 1부 보관)
- 거처변동내역서(3부 작성 사무소에 1부 보관, 조사관리과에 1부 제출)

다. 제출일자

- 조사원은 각 사무소에 매월 심사주간까지 제출한다.
- 사무소장은 익월 5일까지 전산입력이 처리될 수 있도록 업무관리를 한다.

참고 : 부호기입요령 및 주요 착오사례

1. 부호기입 요령

2. 주요착오 사례

1. 부호기입 요령

가. 가구표

조사표상 항목번호	항 목 명	칼럼수	부 호 내 용				
-	가 구 표	1	1				
-	일 련 번 호	5	<table style="width: 100%; border: none;"> <tr> <td style="text-align: center; width: 50%;">○○</td> <td style="text-align: center; width: 5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사무소번호</td> <td style="text-align: center;">일련번호</td> </tr> </table>	○○	○○○	사무소번호	일련번호
○○	○○○						
사무소번호	일련번호						
1	조 사 구 번 호	7	○○○○○-○○				
2	구 역 번 호	2	○○ 예) 제1구역 → 01 제7구역 → 07				
3	거 처 번 호	2	○○ 예) 1번거처 → 01 10번거처 → 10				
4	가 구 번 호	4	○○ ○○				
5	거 처 구 분	1	1. 단독주택 2. 다세대주택 3. 연립주택, 빌라 4. 아파트 5. 기 타				
6	소 유 구 분	1	1. 자 가 2. 무 상				

조사표상 항목번호	항 목 명	칼럼수	부 호 내 용			
			3. 관공사택 4. 전 세 5. 보증부월세 6. 삭월세 7. 월 세			
7	방 수	3	총 방수 2칼럼, 사용방수 1칼럼			
8	난 방 시 설	1	1. 연탄아궁이 2. 연탄보일러 3. 기름보일러 4. 가스보일러 5. 중앙난방 6. 기 타			
9	취 사 연 료	1	1. 연 탄 2. 기 름 3. 가 스 4. 전 기 5. 기 타			
10	내 구 소 비 재 보 유 현 황	5	1. 승용차 2. 에어컨 3. 비디오 4. 피아노 5. P.C			
11	주 된 생 활 비	1	1. 근로소득 2. 사업소득 3. 연 금 4. 재산소득 5. 수증 및 보조 6. 기 타			
12	조 사 구 분	1	1. 도시가계 + 경·인 2. 경제활동·인구동태			
13	경제활동가구구분 <table border="1" data-bbox="293 1315 486 1379"> <tr> <td>①</td> <td>②</td> <td>③</td> </tr> </table> ①	①	②	③		1. 제 외 2. 대 상
①	②	③				

조사표상 항목번호	항 목 명	칼럼수	부 호 내 용			
14	② ③ 도시가계가구구분 <table border="1" data-bbox="363 422 492 487"> <tr> <td>①</td> <td>②</td> </tr> </table> ①	①	②		1. 농 가 2. 비농가 1. 조 사 2. 불 응 3. 불 능 1. 봉급자 2. 노무자 3. 근로자외 4. 무 직 5. 부적격 1. 대상제출 2. 대상미제출 3. 대상부적격 4. 대상외	
①	②					
15	② 가계조사 부적격 사 유	2	01 농 가 02 어 가 03 단 독 04 음식, 숙박 05 하 숙 06 부정기적 출타 07 영업사용인 2인 이상 08 자 취 09 기타 분류불능			
16	미 제 출 란 <table border="1" data-bbox="298 1186 492 1252"> <tr> <td>①</td> <td>②</td> <td>③</td> </tr> </table> ① - ② ③	①	②	③	3	미회수 사유 월평균 추정 소득 계층 구분
①	②	③				
17	주 소	48	한글로 정확히 기입			

조사표상 항목번호	항 목 명	칼럼수	부 호 내 용
18	비 고	9	<p>시도, 구시군, 동읍면 명칭기입은 생략하고(컴퓨터로 처리) 번지 및 통반만을 기입한다.</p> <p>- 전출년월 4컬럼 - 전출목적지 5컬럼</p>
19	가 구 원 번 호	2	<p>○○ 예) 1번 가구원 → 01</p>
20	이 름	20	한글로 정확하게 기입한다.
21	가구주와의 관계	4	<p>○○ ○○ 가<u>구주와의</u> 15세 미만 <u>관 계</u> <u>아동의</u> <u>모의</u> <u>가구원</u> <u>번호</u></p> <p style="text-align: center;"><u>가구주와의 관계</u></p> <p>01 가 구 주 02 배 우 자 03 가구주의 미혼자녀 04 가구주 및 처의 형제 자매 (미혼자) 05 가구주 및 처의 부모 06 가구주 및 처의 조부모 07 가구주의 기혼자녀 및 그 배우자, 자녀 08 가구주의 기혼형제 및 그 배우자, 자녀</p>

조사표상 항목번호	항 목 명	칼럼수	부 호 내 용			
			09 기타 친척 00 동거인(영업사용인, 가정부, 하숙생 등) * 15세 미만 아동의 모의 가구원 번호 : - 가구주와의 관계란을 참고로 모의 번호를 찾는다 - 모가 같은 가구에 없을 경우 88로 한다.			
22	성 별	1	1. 남 자 2. 여 자			
23	생 년 월 일	7	○○○○ ○○ ○○ 년도 월 일 예) 생년월일 1952. 2. 23 부 호 9520223			
24	학 력	3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r> <td style="padding: 2px;">①</td> <td style="padding: 2px;">②</td> <td style="padding: 2px;">③</td> </tr> </table>	①	②	③		
①	②	③				
	①	1	1. 국민학교 2. 중학교			
			3. 고등학교 4. 전문대			
			5. 대학교 6. 대학원이상			
	②		1. 1학년 2. 2학년 3. 3학년			
			4. 4학년 5. 5학년 6. 6학년			
	③		1. 졸업 2. 재 학 3. 중 퇴			

조사표상 항목번호	항 목 명	칼럼수	부 호 내 용
25	배 우 관 계	1	1. 미 혼 2. 유 배 우 3. 사 별 4. 이 혼
26	초 혼 년 월	4	$\frac{\text{〇〇}}{\text{년도}}$ $\frac{\text{〇〇}}{\text{월}}$ 예) 1978.4 → 7804 * 미혼인 여자가 임신을 한 경 우 미혼모 표시로 초혼년월에 '9999' 부호 기입
27	이 상 자 녀	2	가임 유배우 여성(15 ~ 49)에 한해 기입 $\frac{\text{〇}}{\text{남아수}}$ $\frac{\text{〇}}{\text{여아수}}$ * 남여를 구분하지 않고 1명을 원할 때는 '91', 2명을 원할 때는 '92', 3명 이상을 원할 경우에는 '99'로 부호 기입
28	임 신 년 월 ③	4	$\frac{\text{〇〇}}{\text{년}}$ $\frac{\text{〇〇}}{\text{월}}$ 예) 임신년월 1985년 7월 : 8507
29	총 출 생 아	1	0 - 9 (10명 이상일 때는 9로 기입)

조사표상 항목번호	항 목 명	칼럼수	부 호 내 용
30	전 입 년 월	6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u>○○</u> 년</div> <div style="text-align: center;"><u>○○</u> 월</div> <div style="text-align: center;"><u>○○</u> 일</div> </div>
31	경 활 상 태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 15세미만 제외 12. 15세이상 제외 21. 대상중 취업 22. 대상중 실업 23. 대상중 비경활
32	비 고	9	18란과 동일

나. 변동보고서

(1) 가구증가

조사표상 항목번호	항 목 명	칼럼수	부 호 내 용
-	변 동 보 고 서	1	2
-	일 련 번 호	5	$\frac{\text{○○}}{\text{사무소번호}}$ $\frac{\text{○○○}}{\text{일련번호}}$
-	변 동 년 월	3	$\frac{\text{○}}{\text{년}}$ $\frac{\text{○○}}{\text{월}}$ 예) 1990년 8월인 경우 → 008
1	조 사 구 번 호	7	○○○○○-○○
-	카 드 구 분	1	1 : 가구증가
7	구역·거처 및 가 구 번 호	8	○○ ○○ ○○ ○○
8	가 구 주 이 름	-	한글로 정확히 기입
9	가 구 원 수	2	○○ 예) 가구원수가 2명인 경우 → 02
10	변 동 일 자	6	$\frac{\text{○○}}{\text{년}}$ $\frac{\text{○○}}{\text{월}}$ $\frac{\text{○○}}{\text{일}}$ 예) 1990년 6월 23일에 변동했 을 경우 → 900623
11	전 거 주 지	5	$\frac{\text{○}}{\text{이동종류}}$ $\frac{\text{○○}}{\text{시도}}$ $\frac{\text{○○○}}{\text{구시군}}$

조사표상 항목번호	항 목 명	칼럼수	부 호 내 용																					
12	이 동 사 유	4	<p>◎ 이동종류</p> <table border="0"> <tr> <td></td> <td>같은집</td> <td>0</td> </tr> <tr> <td rowspan="2">다</td> <td>조사구역</td> <td>1</td> </tr> <tr> <td>기타구역 --</td> <td></td> </tr> <tr> <td rowspan="2">른</td> <td>같은 구시군</td> <td>2</td> </tr> <tr> <td>타 구시군 -</td> <td></td> </tr> <tr> <td rowspan="2">집</td> <td>같은 도</td> <td>3</td> </tr> <tr> <td>타 도</td> <td>4</td> </tr> <tr> <td></td> <td>외 국</td> <td>5</td> </tr> </table> <p>(외국은 국명과 관계없이 505000으로 한다.)</p> <p>◎ 시도, 구시군 행정구역 분류번호에 의함</p> <p>○○ 주된사유 ○○ 두 번째 사유</p> <p>* 사유가 한가지 뿐인 경우는 두번째 사유란은 00을 한다.</p> <p><u>이동사유</u></p> <p><u>직업관계</u></p> <p>11 취업, 전직, 직장이동</p> <p>12 구직</p> <p>13 전근(동일직장내외)</p>		같은집	0	다	조사구역	1	기타구역 --		른	같은 구시군	2	타 구시군 -		집	같은 도	3	타 도	4		외 국	5
	같은집	0																						
다	조사구역	1																						
	기타구역 --																							
른	같은 구시군	2																						
	타 구시군 -																							
집	같은 도	3																						
	타 도	4																						
	외 국	5																						

조사표상 항목번호	항 목 명	칼럼수	부 호 내 용
			14 새로운 사업시작(상업, 사업) 관계로 15 생활근거가 있기 때문에 19 기타 직업관계 20 입대, 제대 <u>주 택 관 계</u> 31 더 좋은 주택(집)을 지어서, 집을 사서 32 집세가 만기가 되어서, 집세가 올라서(싼 집을 찾아서) 39 기타 주택관계 <u>가 족 관 계</u> 41 혼인 42 분가, 부모 등 가족을 따라서 (부모 등 가족이 먼저 이동한 경우) 43 귀가, 귀향, 가족과 합류, 가사를 돌보기 위하여, 가정형편상 44 친척집으로, 아는 사람이 있어서, 친척들이 많이 사는 곳으로 45 이혼 49 기타 가족관계

조사표상 항목번호	항 목 명	칼럼수	부 호 내 용
			<p style="text-align: center;"><u>교육 관계</u></p> <p>51 자신의 교육을 위하여, 학교 다니러</p> <p>52 가족의 교육때문에, 학교 다니는 아들(손자, 동생) 밥 해주러</p> <p>59 기타 교육관계</p> <p style="text-align: center;"><u>건강 관계</u></p> <p>61 본인의 건강상 이유로</p> <p>62 환경이 좋은 곳으로, 공기가 좋아서, 거주지 환경이 나빠서(이전 거주지)</p> <p>69 기타 건강관계</p> <p style="text-align: center;"><u>교통 관계</u></p> <p>71 직장(학교) 가까운 곳으로</p> <p>72 교통이 편리하여(전에 살던 곳이 교통이 불편하여)</p> <p>73 시장이 가까와서(전에 살던 곳이 시장이 멀어서)</p> <p>79 기타 교통관계</p> <p style="text-align: center;"><u>기 타</u></p> <p>81 살기가 좋아서 (서울)이 좋아서</p>

조사표상 항목번호	항 목 명	칼럼수	부 호 내 용
13	변 동 구 분	2	<p>(영동)이 좋아서</p> <p>82 하숙방 이동으로, 좋은 하숙 으로</p> <p>89 기 타 92 철 거</p> <p>99 미 상</p> <p>11 가구전입 12 개인전입</p> <p>21 전입누락</p> <p>22 착오(전입)</p> <p>25 출 생</p> <p>30 조사구내 이동으로 포함 (전입)</p> <p>31 조사구교체 및 조사구역 교체로 포함(전입)</p> <p>33 조사구 추가추출로 포함 (전입)</p> <p>51 가구전출 52 개인전출</p> <p>61 전출누락</p> <p>62 착오(전출)</p> <p>75 사 망</p> <p>80 조사구내 이동으로 제외 (전출)</p> <p>81 조사구교체 및 조사구역 교체로 제외(전출)</p>

조사표상 항목번호	항 목 명	칼럼수	부 호 내 용
			91 신 축 92 철 거 93 조사구 분할 및 조사구역 재설정으로 포함(전입) 94 조사구 분할 및 조사구역 재설정으로 제외(전출)

(2) 가구감소

조사표상 항목번호	항 목 명	칼럼수	부 호 내 용
-	변 동 보 고 서	1	2
-	일 련 번 호	5	○○○ 사무소번호 ○○○ 일련번호
-	변 동 년 월	3	○ 년 ○○ 월
1	조 사 구 번 호	7	변동보고서항목 ①란 참조
-	카 드 구 분	1	2 : 가구감소
16	구역·거처 및 가 구 번 호	8	1카드 가구증가란 ⑦란 참조
17	가 구 주 이 름	-	한글로 정확히 기입
18	가 구 원 수	2	1카드 가구증가란 9 란 참조
19	변 동 일 자	6	1카드 가구증가란 10란 참조
20	목 적 지	5	1카드 가구증가란 11란 참조
21	이 동 사 유	4	1카드 가구증가란 12란 참조
22	변 동 구 분	2	1카드 가구증가란 13란 참조

(3) 가구원 증가

조사표상 항목번호	항 목 명	칼럼수	부 호 내 용
-	변 동 보 고 서	1	2
-	일 련 번 호	5	○○ 사무소번호
-	변 동 년 월	3	○○○ 일련번호
-	조 사 구 번 호	7	○ 년
-	카 드 구 분	1	○○ 월
24	구역·거처 및 가 구 번 호	8	1카드 가구증가란 ①란 참조
25	가 구 원 번 호	2	3 : 가구원 증가
26	이 름	20	1카드 가구증가란 ⑦란 참조
27	가구주와의 관계	4	○○
28	성 별	1	예) 2번 가구원 → 02
29	생 년 월 일	7	한글로 정확히 기입
30	학 력	3	가구표항목 21란 참조
31	배 우 관 계	1	1. 남 자 2. 여 자
32	초 혼 년 월	4	가구표항목 23란 참조
33	이 상 자 녀	2	가구표항목 24란 참조
34	임 신 여 부	4	가구표항목 25란 참조
			가구표항목 26란 참조
			가구표항목 27란 참조
			가구표항목 28란 참조

조사표상 항목번호	항 목 명	칼럼수	부 호 내 용
35	총 출 생 아	1	0 - 9
36	전 입 일 자	6	1카드 가구증가란 10란 참조
37	경 활 상 태	2	가구표항목 31란 참조
38	전 거 주 지	5	1카드 가구증가란 11란 참조
39	이 동 사 유	4	1카드 가구증가란 12란 참조
40	변 동 구 분	2	1카드 가구증가란 13란 참조

(4) 가구원 감소

조사표상 항목번호	항 목 명	칼럼수	부 호 내 용
-	변 동 보 고 서	1	2
-	일 련 번 호	5	<u>○○</u> <u>○○○</u> 사무소번호 일련번호
-	변 동 년 월	3	<u>○</u> <u>○○</u> 년 월
-	조 사 구 번 호	7	1카드 가구증가란 ①란 참조
-	카 드 구 분	1	4 : 가구원 감소
42	구역·거처 및 가 구 번 호	8	1카드 가구증가란 ⑦란 참조
43	가 구 원 번 호	2	3카드 가구원증가 25란 참조
44	이 름	20	한글로 정확히 기입
45	변 동 일 자	6	1카드 가구증가란 10란 참조
46	목 적 지	6	1카드 가구증가란 11란 참조
47	이 동 사 유	4	1카드 가구증가란 12란 참조
48	변 동 구 분	2	1카드 가구증가란 13란 참조

(5) 가구표 수정요구사항

조사표상 항목번호	항 목 명	칼럼수	부 호 내 용
-	변 동 보 고 서	1	2
-	일 련 번 호	5	$\frac{\text{○○}}{\text{사무소번호}}$ $\frac{\text{○○○}}{\text{일련번호}}$
-	변 동 년 월	3	$\frac{\text{○}}{\text{년}}$ $\frac{\text{○○}}{\text{월}}$
-	조 사 구 번 호	7	1카드 가구증가란 ①란 참조
-	카 드 구 분	1	5 : 가구표 수정요구사항
49	구역·거처 및 가 구 번 호	8	1카드 가구증가란 ⑦란 참조
50	가 구 원 번 호	2	3카드 가구원증가 25란 참조
51	가구표란 번 호	2	<p>○○</p> <p>예) 가구표항목 소유구분란 (6란) → 06</p> <p>가구표항목 초혼년월란 (26란) → 26</p>
52	수 정 내 용	14	<p>○○○○○○○○○</p> <p>→ ○○○○○○○○○○</p>

(6) 조사구내 이동

조사표상 항목번호	항 목 명	칼럼수	부 호 내 용
-	변 동 보 고 서	1	2
-	일 련 번 호	5	○○ ○○○ 사무소번호 일련번호
-	변 동 년 월	3	○ ○○ 년 월
-	조 사 구 번 호	7	1카드 가구증가란 ①란 참조
-	카 드 구 분	1	6 : 조사구내 이동
53	조사구내이동구분	2	01 가구이동 02 가구원이동 03 분 가 04 통 합
54	이동전 가구번호	8	1카드 가구증가란 ⑦란 참조
55	이동전가구원번호	2	3카드 가구원증가 25란 참조
56	이동후 가구번호	8	1카드 가구증가란 ⑦란 참조
57	이동후가구원번호	2	3카드 가구원증가 25란 참조
58	가구주와의 관계	4	가구표항목 21란 참조
59	거 처 의 종 류	1	가구표항목 ⑤란 참조
60	주택 소유 관계	1	가구표항목 ⑥란 참조
61	배 우 관 계	1	가구표항목 25란 참조
62	초 혼 년 월	4	가구표항목 26란 참조

(7) 임신기록 및 결과

조사표상 항목번호	항 목 명	칼럼수	부 호 내 용
-	변 동 보 고 서	1	2
-	일 련 번 호	5	$\frac{\text{○○}}{\text{사무소번호}}$ $\frac{\text{○○○}}{\text{일련번호}}$
-	변 동 년 월	3	$\frac{\text{○}}{\text{년}}$ $\frac{\text{○○}}{\text{월}}$
-	조 사 구 번 호	7	1카드 가구증가란 ①란 참조
-	카 드 구 분	1	7 : 임신기록 및 결과
63	구역·거처 및 가 구 번 호	8	1카드 가구증가란 ①란 참조
64	가 구 원 번 호	2	3카드 가구원증가 25란 참조
65	부 인 이 름	20	
66	임 신 년 월	4	가구표항목 28란 참조
67	결 과	1	1. 출 생 2. 중 절 3. 사 산 4. 기 타
68	비 고	-	

2. 주요 착오 사례

착 오 사 례	개 선 사 항
1. 전출간 가구원을 계속 조사하는 사례	- 가구를 수시로 방문하여 그 가구의 변동사항 및 특성을 상세히 파악하여야 한다.
2. 수정요구할 수 없는 조사구, 구역, 거처 및 가구번호를 “5가구표 수정요구사항”에 수정을 하므로써, 가구가 중복 또는 누락되는 예	- ①-④란까지는 변동보고서 “5수정요구”란에서 수정요구할 수 없음. 다만 ②-④를 수정요구코자 할 때는 변동보고서 “6 조사구내 이동”을 이용하여 가구이동으로 처리한다.
3. 기혼인 가구원의 가구주와의 관계부호를 미혼 가구원의 관계부호로 잘못 기입하였기 때문에 기혼자의 초혼년월이 누락되는 사례	- 미혼 가구원을 기혼 가구원으로 수정할 때에는 가구표 21란 가구주와의 관계(예: 미혼장남 → 기혼장남)와 25란 배우관계 및 26란 초혼(初婚)년월을 동시에 수정 요구하여야 한다.
4. 전입과 동시에 조사대상기간 안에 인구동태 사항(출생, 사망, 혼인, 이혼)이 발생하였을 때, 조사	- 인구동태 표본조사의 조사대상기간은 전월 16일부터 금월 15일까지 1개월간임. 생년월일이 조

착 오 사 례	개 선 사 항
표를 작성하지 않고, 가구표에만 기입하여 누락	사대상기간안에 있을 때는 전입과 동시에 출생이므로 조사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새로 세들어온 전입가구를 누락시킨 사례	- 가구의 변동을 수시로 파악하고, 특히 전출·입 가구에 대하여는 통, 반장과의 유대관계를 높여 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6. 처음 조사 당시 작은 아들집에 잠깐 다니러간 노인(가구주의 모친)을 누락한 사례	- 조사기준일 현재 상주 거주자는 조사대상 제외자를 빼놓고는 일단 조사해야 한다. - 당연히 조사대상 가구원이었으나 불충분한 면접으로 인한 것으로, 가구의 특성(特性)을 충분히 파악(把握)하여야 한다.
7. 가구방문 횟수 부족으로 인한 출생 누락 사례	- 가구를 수시로 방문하여 그 가구의 변동사항 및 특성을 상세(詳細)히 파악하여야 한다.
8. 동일조사구내에서 이동하는 가구의 변동, 전후(前後)사항을 모두 기입하는 사례	- 조사구내 이동에는 아래의 네 가지 경우가 있으며, 01: 가구이동 02: 가구원이동 03: 분 가 04: 통 합

착 오 사 례	개 선 사 항
<p>9. 전에 있던 가구가 전출가고 그 자리에 새로운 가구가 전입와서 사용하는 사례</p> <p>10. 전입과 동시에 사망 가구원이 있을 경우</p>	<p>‘01’ 가구이동은 이동전 가구번호와 이동후 가구번호만 기입하여야 하며, 나머지 항목은 『\』을 한다.</p> <p>이때 가구표 가구에 관한 사항이 바뀌는 경우는 변동보고서 “5 가구표 수정요구사항”에 수정요구를 하여야 한다.</p> <p>- 가구번호는 한번 사용했던 것은 다시 사용할 수 없다.</p> <p>각 가구별로 가구변동 횟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가구가 이동하여 다른 거처로 옮겨 갔더라도 이동전(移動前)가구번호는 다른 가구가 사용할 수 없으므로 주의 요망.</p> <p>- 일단 전입후 사망한 것으로 처리하여 가구표에 등재와 동시에 변동보고서 ‘4 가구원 감소’ 란에 사망처리함.</p>

착 오 사 례	개 선 사 항
<p>11. 조사지역내에 전세집을 얻어 놓고 조사지역이 아닌 인근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가구인데 식사도 거기에서 하며 다만 밤에 잠만 자러 온다고 하여 조사요원이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함.</p> <p>조사원의 말에 의하면 지침서에서 가구의 정의는 ‘1인 또는 2인 이상이 한데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모임’ 이라 했는데 그중 취침만 하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함.</p>	<p>- 지침서의 가구에 대한 정의는 ‘취사, 취침’ 등 생계를 함께하는 모임이라 했지만 그 뜻은 생활의 근거지가 어디인가를 설명하는 것이었음.</p> <p>이 사례의 경우 편의상 임시적으로 시장에서 취사했지만 생활의 근거지는 본 조사지역이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생활의 근거지가 어디인가를 파악하여야 할 것임.</p>
<p>12. 세자매가 세들어 살고 있는데 그중 2명은 학생이고 1명은 취업자인데 취업자인 큰 언니가 직장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전출했다가 약 한달 후에 다시 전입하여 다른 직장에 다니고 있었음.</p>	<p>- 면접이 곤란한 가구는 가구원의 직장 전화번호 등 가구사항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하여 수시로 가구원에게 직접 확인 조사토록 할 것임.</p>

착 오 사 례	개 선 사 항
<p>그런데 현재의 직장은 아침 6시에 출근, 저녁 8시에 퇴근하여 조사원의 정상근무중에는 면접이 곤란한 가구원이었음.</p> <p>조사원은 주인가구에게 세든 가구의 변동사항만은 질문하여 가구표를 작성하였으나 중앙직원에 의한 출장 확인시 동생이 재학중인 학교에 전화 연락하여 직접 가구의 변동사항을 확인하였던 바 큰 언니의 전입사실이 확인되었음.</p> <p>13. 가정부인데 처음부터 오래 있을 생각은 없고 일단 있어 보아서 괜찮으면 계속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곧 나갈 것이라 하여 전입가구원으로 잡지 않았다고 함.</p> <p>그러나 중앙직원에 의한 확인결과 5개월이나 그 가구에 계속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p>	<p>- 매월 가구를 방문할 때는 변동된 가구원이 있는지 일일이 확인하고 특히 전월에 애매한 응답을 한 가구원에 대해서는 가구표에 표시를 해서 꼭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p>

착 오 사 례	개 선 사 항
<p>14. 학교에 다니던 가구원이 무작정 집을 나갔는데(무단가출) 부모들은 곧 돌아올 거라고 하여 전출로 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함. 그러나 중앙직원에 의한 확인결과 집을 나간지가 벌써 4개월이나 되었음이 밝혀졌으며 또한 나간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함. 조사원은 매월 그 가구원에 대해 질문했으나 항상 곧 올거라고 대답하여 전출로 잡지 않았다고 해명했음.</p>	<p>- 일정한 목적지 및 기간이 없이 나간 사람은 잠깐 다니러 간 사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주가 구원 개념에 의하여 전출로 처리해야 하며, 단순히 응답자의 말만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처리하지 말고, 나간 이후 언제 돌아온다는 소식이 있었는가 등으로 질문하여 담당조사원 단독으로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리요원과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p>
<p>15. 출생아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조사지역 밖에서 거주하고 부모는 조사지역내에서 가게를 하며 살고 있는데 애기는 할머니 집에서 기르고 있음. 그러므로 상주 가구원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조사원은 애기를 조사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함.</p>	<p>- 출생의 조사대상은 출생아의 모가 조사지역내에 상주한 경우임. 비록 출산시에는 조사지역밖(병원, 친정)에서 출산을 하였다 할지라도 모(母)가 조사지역내에 상주할 경우에 출생아는 조사대상이 됨. 각 사무소에서는 신규 임용 조사원이나 지침서의 내용</p>

착 오 사 례	개 선 사 항
<p>16. 아이가 둘(딸만 둘)이나 있는데 또 임신을 해서 남보기가 부끄럽다고 하여 조사원이 방문할 때마다 방안에 앉아서 응답을 했으므로 출산시까지 부인의 배가 부른걸 전혀 조사원이 몰랐다고 함. 중앙에서 현지확인시 이웃가구 및 가구표상의 자녀의 구성(아들, 딸 등)을 참고하여 확인하여 누락임이 밝혀졌음.</p> <p>17. 조사지역(시골)내에 살던 할아버지가 작은 아들(서울)집에 다니러 갔다가 병이 나서 병원에 입원중 사망하여 병원 영안실에서 장지로 갔기 때문에(사망후 조사지역으로 모시고 오지 않았고 조사지역에서 장례식도 치르</p>	<p>을 숙지하지 못한 조사원에게 충분히 교육을 시켜 조사에 임하도록 할 것임.</p> <p>- 가구표상에 기입된 가구의 구성상태 등을 참고하여 조사하는 조사테크닉 및 한 가구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다음 가구에 가서 반드시 전가구의 인구동태 사항을 다시 확인하는 조사 습관을 익히도록 하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임.</p> <p>- 상주가구원이 잠깐 다른 곳에 다니러 갔을 경우 그 다음달에 반드시 다시 돌아왔는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연로자일 경우에는 관심을 가지고 확인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p>

착 오 사 례	개 선 사 항
<p>지 않았기 때문) 조사원은 그 가구에 사망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중앙 직원에 의한 확인시 할아버지가 지금 어디 가셨는가 질문하여 사망누락임이 밝혀졌음.</p>	
<p>18. 조사지역내에 살던 가구(가구주)가 조사지역 밖에 살던 사람의 양자였는데, 사망후 조사지역내로 모셔다가 장례도 치르고 또 삼오제도 지내고 하여 사망으로 간주하여 조사표를 제출했음. 그러나 중앙직원에 의한 확인시 사망자는 그 가구의 상주가구원이 아니어서 사망 대상에서 제외되었음.</p>	<p>- 가구표상에는 사망자가 가구원으로 기재되어 있지도 않았는데 확인해 보지 않고 다만 그 가구에서 장례식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사망조사표를 작성한 결과이므로 조사원에게 “조사대상 여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침서의 내용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p>
<p>19. 이상자녀수를 조사하는 범위는?</p>	<p>- 유배우인 임신가능 부인에게만 조사한다.</p>
<p>20. 출산 예정기간 및 결과의 조사 요령은?</p>	<p>- 임신부인은 배우관계 및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조사한다. 따라서 미혼, 이혼, 사별중인 여자가 임신</p>

착 오 사 례	개 선 사 항
<p>21. 사실상의 혼인년월의 정의는?</p> <p>22. 부부중 1인이 가정불화 또는 기타 사유로 이혼의사 표시도 없이 가출을 했을 경우 배우관계 처리 및 조사표 작성 여부는?</p> <p>23. 이혼 조사표의 생존자녀수 조사 요령은?</p>	<p>을 한 경우에도 본란을 조사하여야 한다.</p> <p>- 남녀가 동거를 시작한 때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동거년월일은 일정한 물리적 장소를 갖추고 두 사람이 함께 생활을 시작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p> <p>-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당사자들의 재결합이 불가능할 경우는 배우관계를 이혼으로 처리하고 이혼 조사표를 작성한다. 단, 재결합 여부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는 배우관계를 종전 그대로(유배우) 두되 그 가출자에 대해서는 전출로 처리한다.</p> <p>- 이혼 당시 동거했던 자녀수를 조사한다. 따라서 이혼녀가 직접 출산한 자녀라도 이혼 당시 동거하지 않았으면 이를 제외하고, 재혼으로서 전 소생 자녀들과 이</p>

착 오 사 례	개 선 사 항
<p>24. 가구가 아직 입주하지 않고 빈 거처로 남아있으나 전체적인 주택형태를 갖추고 있는 신축거처의 처리 요령은?</p> <p>25. 누락 및 중복된 가구(가구원)의 처리요령은?</p> <p>26. 상가와 주택이 함께 있는 혼합 건물에 대한 거처의 처리요령은?</p> <p>27. 전입가구가 있었으나 아직 가구원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가구(장기출타, 짐만 와있음)의 가구표 작성 시기는?</p>	<p>혼 당시 동거하였으면 이를 포함 조사한다.</p> <p>- 아직 입주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거처가 완성되면 신축보고를 하여 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p> <p>- 최초 작성기준일(조사대상가구로 되었던 시점)에 전출·입 누락(21,61) 처리한다.</p> <p>- 조사관리 편의상 별도 거처번호 부여가 편리하다면 개별로 부여한다. 그러나 거처구분이 모호한 건물은 1개의 거처로 분류하여도 무방함. (단, 쉽게 가구확인이 가능하도록 요도상에 별도 확대도를 그려 놓을 것)</p> <p>- 조사가 가능하게 될 때 작성하되 조사기준 시점은 소급하여 최초 전입일자로 한다.</p>

착 오 사 례	개 선 사 항
<p>28. 경찰서 보호실 또는 구치소에 수감되었으나 형이 확정되지 않은 가족을 조사대상에서 제외시킨 사례?</p>	<p>- 실행언도를 받고 교도소, 소년원 또는 감옥에서 복역중인 사람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나 미결수는 조사하여야 한다.</p>
<p>29. 임신부인이 정상출산한 경우는?</p>	<p>- 변동보고서 7카드를 이용하여 임신결과를 보고하고 변동보고서 5카드를 이용하여 가구표상의 28(임신년월)란과 29(총 출생자녀)란을 수정하고, 인구동태 조사표와 내용을 반드시 통일시켜야 한다.</p>
<p>30. 가구주가 취업하고 있는 사업체의 종업원규모를 응답자(주부)가 자세히 몰라 착오 발생하는 사례</p>	<p>- 애매모호한 응답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본인에게 질문하거나 정확한 응답을 유도토록 노력필요</p> <p>- 본인의 면접이 어려운 경우 보조조사표를 최대한 활용하여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함</p>
<p>31. 조사대상주간에 종업원 없이 사업주 혼자 운영하는 화물 취급 용달차 주인(직접운전)을 통상</p>	<p>- 영세업체는 종업원이 없이 직접 경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사업체의 규모와 성격 등을</p>

착 오 사 례	개 선 사 항
<p>이삿짐센타라고 하는 얘기로 듣고 종업원이 있는 걸로 생각하고 『고용주』로 착오 조사한 사례</p>	<p>정확히 파악하여 조사하는 것이 필요</p>
<p>32. 단독가구(40세남자)의 본인은 『유배우』라 응답하나 인접 가구에서는 『미혼』이라고 응답한 사례</p>	<p>- 실제로 이혼, 사별, 미혼일 수 있으나 체면때문에 사실대로 응답을 앓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요주의 조사대상자로하여 계속 추적 조사 필요</p>
<p>33. 형의 구두공장에서 근무하면서 매월 소득이 있는 동생을 무급 가족종사자로 조사한 사례</p>	<p>- 가족종사자인 경우라 하더라도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받으면 임금근로자로 분류하여야 함.</p>
<p>34.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중요항목인 경제활동상태의 구분을 착오 즉 『일하였슴』으로 조사하여야 할 조사대상자를 『가사』로 잘못 조사한 사례</p>	<p>- 낮에 조사대상자를 면접하지 못한 경우 재차 방문시 조사할 수 있도록 『방문일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가급적 저녁 이후에 조사할 수 있는 방안 강구.</p>
<p>35. 어머니는 총출생아수가 3명으로 답변하였으나 딸에게 문의하여 알아본 결과 4명으로 답변.</p>	<p>- 불의의 사고로 자녀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출산하지 않은 것으로 해서 답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친숙해진 다음 다시한번 확인요.</p>

착 오 사 례	개 선 사 항
<p>36. 조사담당직원은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으로 조사하였으나 현지 확인 결과 1년 휴학한 후 입학하여 현재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임.</p>	<p>- 애매모호한 응답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본인에게 질문하여 정확한 답변을 유도</p>
<p>37. 무보수직 구의원으로 비경활인구로 분류되어 있으나 조사대상기간중에 의회 개회를 하였을 때의 취업활동여부?</p>	<p>- 조사대상기간중에 의회개회를 하여 일비를 지급받기 때문에 취업활동으로 보아 경제활동인구로 조사하여야 함.</p>
<p>38. 가구주의 모친이 실제로 계속 거주하면서 다른지역으로 주민등록상 전출한 것을 가구원에서 제외한 사례</p>	<p>- 주민등록지 거주와 관계없이 조사기간중 조사구내에 생활 근거를 갖고 있으면서 매월 15일 현재 만 15세 이상인 사람은 조사 대상으로 하여야 함.</p>
<p>39. 현재 가게를 운영하면서 보일러 수리 및 시공을 하고 있으나 조사 대상기간중 일거리가 없었다고 하여 비경제활동인구로 조사</p>	<p>- 자영업자의 경우 적자여부를 불문하고 조사대상기간에 사업체 운영을 위해 시간을 보낸 경우는 취업활동으로 간주되므로 취업자로 조사하여야 함.</p>
<p>40. 가구표의 내구소비재 보유현황 항목의 승용차 조사에 영업용도</p>	<p>- 영업용 개인택시는 내구소비재의 승용차에서 제외하여야 함.</p>

착 오 사 례	개 선 사 항
<p>포함 조사한 경우</p> <p>41. 대학재학중 군입대하여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대기중인 경우 교육정도 ?</p> <p>42. 가구표 기재사항에서 변동된 내용이 전산 화일 내용과 불일치하거나 미입력된 사례</p> <p>43. 본인 보관 가구명부와 사무소 보관분 가구명부의 내용 불일치한 경우(가구주 직업, 가구원수, 취업자수등)</p> <p>44. 도시가계 대상가구가 월중전출 또는 월중부적격인 경우에 가계부를 미제출하였다고 하여 대상외로 처리한 경우?</p> <p>45. '94. 11. 27 전출간 가구를 CICS</p>	<p>- 중퇴로 처리</p> <p>- 변동내역은 즉시 입력되어 가구표의 조사내용과 전산마스타 화일 내용이 항상 일치하여야 함</p> <p>- 가구, 가구원이 변동사항이 있으면 즉시 본인 뿐 아니라 사무소 보관분까지 수정 보완토록 하여야 함.</p> <p>- 도시가계 대상기간에 전출 또는 부적격이 된 경우라 하더라도 도시가계대상이므로 그 가구에서 가계부를 제출한 경우에는 대상제출로 처리하고 미제출인 경우는 대상미제출로 처리하고 미제출란에 미회수 사유및 월평균 추정소득계층 구분을 입력</p> <p>- '94. 11. 27전출간 가구는 실사기</p>

착 오 사 례	개 선 사 항
<p>작업시 '94. 12월분 도시가계구분 14란에 미제출로 처리한 사례</p>	<p>간 이후에 전출간 가구로 '94. 12월분에는 대상이 아니므로 CICS 작업시 대상외로 처리해야 하며 '94. 12. 4일 전출간 가구는 '94. 12월분 도시가계조사 대상가구이므로 CICS 작업시 대상미제출로 처리하고 미제출란에 월중전출로 처리하여야 함.</p>
<p>46. 거처변동내역서상 변동거처유형란의 작성시 1층이 상가이고, 2. 3층이 단독주택인 경우 상가주택으로 잘못 작성한 사례.</p>	<p>- 거처구분이 모호할 때는 일차적으로 면적으로 구분하고, 이차적으로 주된 용도에 따라 구분하므로 단독주택으로 작성한다.</p>
<p>47. 거처변동내역서상 변동거처유형란의 작성시 조립식건물을 주택이외의 거처로 잘못작성한 사례</p>	<p>- 조립식건물은 그 용도에 따라서 단독주택, 기타(비거주용 건물내의 주택, 주택이외의 거처)로 구분하여 작성한다.</p>

※ 통계법 제9조에 의하여 통계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함.

가 구 에 관 한 사 항	가 구 표		①조사구 번호	②구역 번호	③거처 번호	④가구 번호	⑤거처구분	⑥소유구분	⑦방수	⑧난방시설	⑨취사연료	⑩내구소비재 보유현황						
	작성년월일 199년 월 일						1. 단독주택 2. 다세대주택 3. 연립, 빌라 4. 아파트 5. 기타	1. 자가 2. 무상 3. 판공주택 4. 전세 5. 보증부월세 6. 식월세 7. 월세	총방수 방수	1. 연탄 2. 가스 3. 전기 4. 기타 ()	1. 연탄 2. 가스 3. 전기 4. 기타 ()	1. 승용차 2. 에어컨 3. 비디오 4. 피아노 5. PC						
사 항	⑪주된생활비	⑫조사구분	⑬경제활동가구구분		⑭도시가계가가구구분		⑮부적격 사유	⑯미제출사유	⑰주 소		⑱비 고							
	1. 근로소득 2. 사업소득 3. 연금 4. 재산소득 5. 수증 및 보조 6. 기타()	1. 도시가계 +경·인 2. 경·인	1. 제외 2. 대상	1. 농가 2. 비농가	1. 조사 2. 불응 3. 불응	1. 봉급자 2. 노무자와 3. 근로자와 4. 무직 5. 부적격	1. 대상제출 2. 대상미제출 3. 대상부적격 4. 대상외											
가 구 원 에 관 한 사 항	⑲번호	⑳이름	㉑가구주 관계	㉒성별		㉓생년월일		㉔학력	㉕배우관계	㉖초혼년월	㉗이상자녀		㉘임신년월	㉙총출생	㉚전입년월일		㉛경 활 상태	㉜비 고
				연도	월	일		연도	월	연도	월	남	여	연도	월	연도	월	일
원			1. 남 2. 여						1. 미혼 2. 유배우 3. 사별 4. 이혼									11. 15세 미만 제외 12. 15세 이상 제외 21. 대상중취업 22. 대상중실업 23. 대상중비경활
관			1. 남 2. 여						1. 미혼 2. 유배우 3. 사별 4. 이혼									11. 15세 미만 제외 12. 15세 이상 제외 21. 대상중취업 22. 대상중실업 23. 대상중비경활
한			1. 남 2. 여						1. 미혼 2. 유배우 3. 사별 4. 이혼									11. 15세 미만 제외 12. 15세 이상 제외 21. 대상중취업 22. 대상중실업 23. 대상중비경활
사			1. 남 2. 여						1. 미혼 2. 유배우 3. 사별 4. 이혼									11. 15세 미만 제외 12. 15세 이상 제외 21. 대상중취업 22. 대상중실업 23. 대상중비경활
항			1. 남 2. 여						1. 미혼 2. 유배우 3. 사별 4. 이혼									11. 15세 미만 제외 12. 15세 이상 제외 21. 대상중취업 22. 대상중실업 23. 대상중비경활

통 계 청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생년월일									학력	배우관계	초혼년월			이상자녀	입신년월	총출생 자녀	전입년월일			
				연도	월	일									연도						월	남	여	연도
가 구 원 에 관 한 사 항			1. 남 2. 여														11. 15세미만제외 12. 15세이상제외 21. 대상중취업 22. 대상중실업 23. 대상중비경활							
			1. 남 2. 여														11. 15세미만제외 12. 15세이상제외 21. 대상중취업 22. 대상중실업 23. 대상중비경활							
			1. 남 2. 여														11. 15세미만제외 12. 15세이상제외 21. 대상중취업 22. 대상중실업 23. 대상중비경활							
			1. 남 2. 여														11. 15세미만제외 12. 15세이상제외 21. 대상중취업 22. 대상중실업 23. 대상중비경활							
			1. 남 2. 여														11. 15세미만제외 12. 15세이상제외 21. 대상중취업 22. 대상중실업 23. 대상중비경활							
			1. 남 2. 여														11. 15세미만제외 12. 15세이상제외 21. 대상중취업 22. 대상중실업 23. 대상중비경활							
			1. 남 2. 여														11. 15세미만제외 12. 15세이상제외 21. 대상중취업 22. 대상중실업 23. 대상중비경활							
			1. 남 2. 여														11. 15세미만제외 12. 15세이상제외 21. 대상중취업 22. 대상중실업 23. 대상중비경활							

※ 통계법 제7조에 의하여 통계작성 이외의 사용을 금함.

변 동 보 고 서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px; height: 20px; margin: 5px auto;"></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50px; height: 20px; float: right; margin-top: 5px;"></div> <p style="text-align: center;">19 년 월분</p>	① 조사구 번호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px; height: 20px; margin: 5px auto;"></div> <p style="text-align: center;">조사구주소 구 동 시 시 읍 리 도 군 면 가</p>	② 가구표정리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조사담당</td> <td style="width: 50%;">과장(계장)</td> </tr> </table>	조사담당	과장(계장)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rowspan="2" style="width: 5%;"></td> <td style="width: 5%;"></td> <td style="width: 15%;">전 월</td> <td style="width: 15%;">증 가</td> <td style="width: 15%;">감 소</td> <td style="width: 15%;">남 월</td> <td rowspan="2" style="width: 1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③</td> <td style="text-align: center;">가구</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연월</td> <td style="text-align: center;">인구</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able>			전 월	증 가	감 소	남 월		③	가구					연월	인구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td>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④ 사당수</td> </tr> <tr> <td style="width: 50%;"></td> <td style="width: 50%;"></td> </tr> </table>		④ 사당수		
조사담당	과장(계장)																													
		전 월	증 가	감 소	남 월																									
	③	가구																												
연월	인구																													
	④ 사당수																													

1 가구 증가 (⑤ 가구 ⑥ 명)							
	⑦ 가구 번호	⑧ 가구주이름	⑨ 가구원수	⑩ 변동일자	⑪ 전 거주지	⑫ 이동 사유	⑬ 구분
1			199		구 시 도	1. 2.	
2			199		구 시 도	1. 2.	
3			199		구 시 도	1. 2.	
4			199		구 시 도	1. 2.	
5			199		구 시 도	1. 2.	
6			199		구 시 도	1. 2.	
7			199		구 시 도	1. 2.	
조사구내의 가구로서 분 가 한 가 구 수			가 구	※ 1. ⑬구분란은 전입, 전입누락, 착오등을 기입 2. ⑮란에는 조사구내 분가한 가구수도 합계됨			

2 가구 감소 (⑭ 가구 ⑮ 명)							
	⑯ 가구 번호	⑰ 가구주이름	⑱ 가구원수	⑲ 변동일자	⑳ 목적지	㉑ 이동 사유	㉒ 구분
1			199		구 시 도	1. 2.	
2			199		구 시 도	1. 2.	
3			199		구 시 도	1. 2.	
4			199		구 시 도	1. 2.	
5			199		구 시 도	1. 2.	
6			199		구 시 도	1. 2.	
7			199		구 시 도	1. 2.	
조사구내의 가구로서 통 합 된 가 구 수			가 구	※ 1. ㉒구분란은 전출, 전출누락, 사망, 착오등을 기입 2. ㉔란에는 조사구내 통합된 가구수도 합계됨			

통 계 청

3 가구원증가 (총 명)

구분	가구번호	가구원번호	성명	생년월일		직업	학력	신장	체중	종교	이혼자녀수	입신여부	총출생자녀수	전업인사	경원상태	전거주지	이동사유	구분
				년	월													
1			1남	19	년	월	일							19		구		
			2여	19	년	월	일								19			
2			1남	19	년	월	일							19		구		
			2여	19	년	월	일								19			
3			1남	19	년	월	일							19		구		
			2여	19	년	월	일								19			
4			1남	19	년	월	일							19		구		
			2여	19	년	월	일								19			
5			1남	19	년	월	일							19		구		
			2여	19	년	월	일								19			
6			1남	19	년	월	일							19		구		
			2여	19	년	월	일								19			
7			1남	19	년	월	일							19		구		
			2여	19	년	월	일								19			
8			1남	19	년	월	일							19		구		
			2여	19	년	월	일								19			
9			1남	19	년	월	일							19		구		
			2여	19	년	월	일								19			
10			1남	19	년	월	일							19		구		
			2여	19	년	월	일								19			

**구분란은 출생, 전입, 누락등으로 기입

4 가구원감소 (비 명)						
42	43	44	45	46	47	48
가구번호	가구원번호	이름	변동일자	목적지	이동사유	구분
			199	구 시 도	1. 2.	
			199	구 시 도	1. 2.	
			199	구 시 도	1. 2.	
			199	구 시 도	1. 2.	
			199	구 시 도	1. 2.	
			199	구 시 도	1. 2.	
			199	구 시 도	1. 2.	
			199	구 시 도	1. 2.	
			199	구 시 도	1. 2.	
			199	구 시 도	1. 2.	

5 가구표수정요구사항				
49	50	51	52 수정항 내용	
가구번호	가구원번호	가구표원번호	수정전내용	수정후내용

※ 52구분란은 전출, 전출누락, 사망, 착오등을 기입

5 가구표 수정요구사항					6 조사구내 이동(가구이동, 가구원이동, 분가, 통합)													
49 가구번호	50 가구원번호	51 가구표 관번호	52 수정할 내용		53 구분	54 이동 가구 번호	55 이동 원 가구원번호	56 이동 후 가구 번호	57 이동 후 가구원번호	이동후변경변내용					58 초혼년월 년 월			
			수정전내용	수정후내용						59 가구주와의 관계	60 거치의종류	61 수역소유관계	62 배우관계	63 연월				
11					1													
12					2													
13					3													
14					4													
15																		
16																		
17					1													
18					2													
19					3													
20					4													

※ 1. 53구분은 "가구이동, 가구원이동, 분가, 통합"을 기입한다. 2. 해당사항이 없으면 사선(\)을 쓴다.
3. 분가한 가구는 가구표를 작성 할부할 것.

7 임신 기록 및 결과						
64 가구번호	65 가구원 번호	66 부인 이름	67 임신년월	68 결과	69 비고	
			19년월	1. 출생 2. 중절 3. 사산 4. 기타		
			19년월	1. 출생 2. 중절 3. 사산 4. 기타		
			19년월	1. 출생 2. 중절 3. 사산 4. 기타		
			19년월	1. 출생 2. 중절 3. 사산 4. 기타		

변동사항	조사구번호				매 월별로 변동보고서의 ③란과④란의 내용을 그대로 기입한다.	비고							
	12월 말 현재	1월 중		1월 말 현재			2월 중		2월 말 현재	3월 중		3월 말 현재	
		증가	감소	출생		증가	감소	출생		증가	감소	출생	
가 구 수													
변동가구원수	/			사 망	/			사 망	/			사 망	/
인 구 수													
가 구 수													
변동가구원수	/			사 망	/			사 망	/			사 망	/
인 구 수													
가 구 수													
변동가구원수	/			사 망	/			사 망	/			사 망	/
인 구 수													
가 구 수													
변동가구원수	/			사 망	/			사 망	/			사 망	/
인 구 수													
가 구 수													
변동가구원수	/			사 망	/			사 망	/			사 망	/
인 구 수													

가 구 명 부

(경제활동·인구통제·도시가계)

조사구 번호

--	--	--	--	--	--	--	--	--	--	--

통계사무소(출장소)

구역 및 거처번호	가 구 번호	가 구 주 이 름	가 구 주 산 업	직 업	가 구 구 분			가 구 원 수	취 업 자 수	진 입		진 출		비 고
					구 분	부 사	적 유			년	월	년	월	

※통계법 제9조에 의하여 통계목적외에 사용을 금함

구역 및 가거번호	가구 번호	가구주 이름	가구주 산업	직업	가구 구분		가구 원수	취업 자수	진입		전출		비고
					구분	부사 직역유			년	월	년	월	

조사구	가구수
합	개
조사구역	
비조사구역	

통계청

담당자 직급
성명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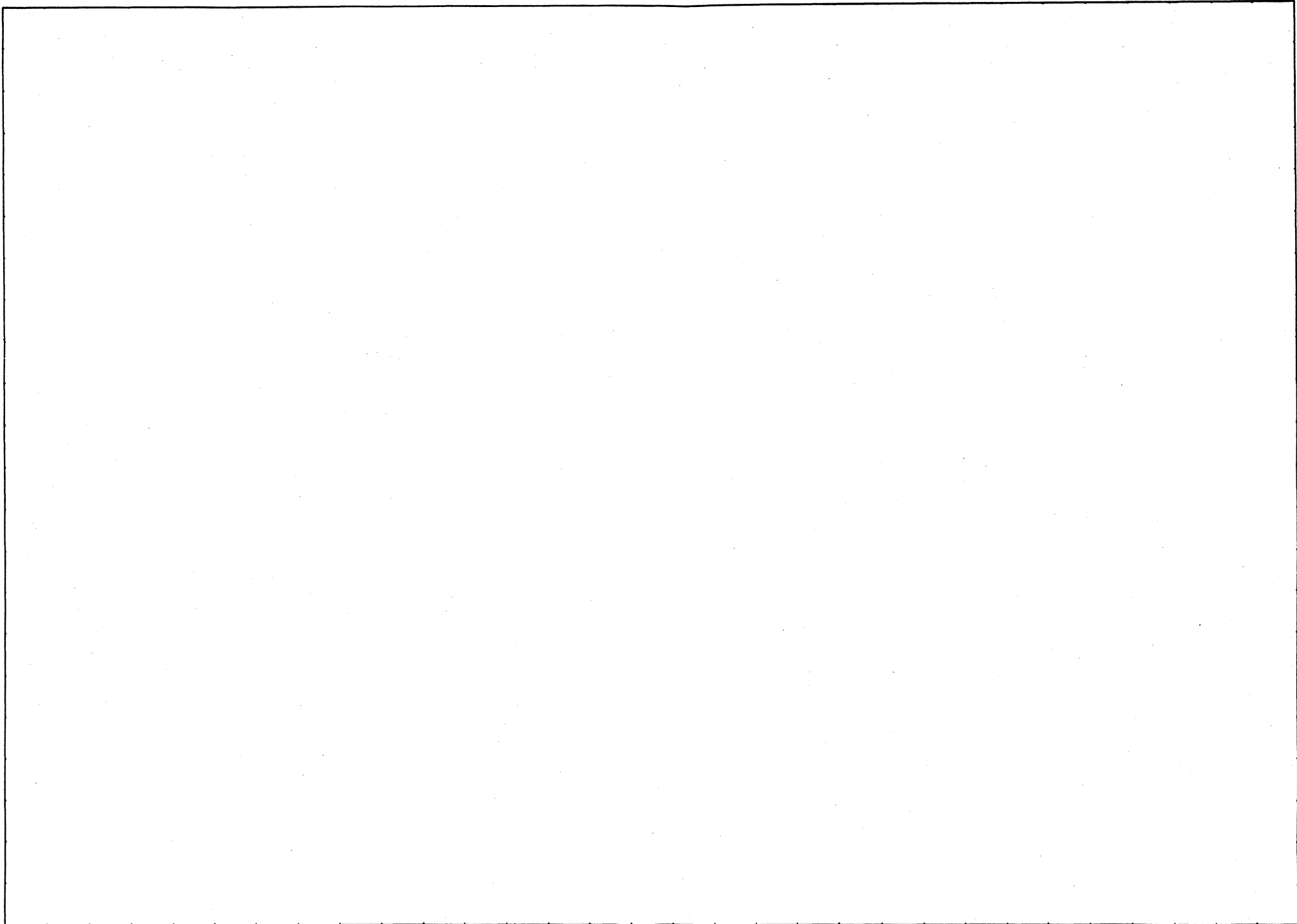
조사구번호

가구부문조사

조사구요도

행정구역

(매중매)



복합표시

기 호	
동읍면경계	-----
통리(구)경계	○-○-○
조사구경계	———— (색채)
차도	==
소로	~~~~
철도	—+—+—+—
교량	—+—+—+—
제방및속대	===== (색채)
하천	~~~~~
담장	~~~~~
거처	□
철벽	≡≡≡≡
관공서및	□□□□□□
복수건물	□□□□□□
산경	△
경지(논밭)
과수원	○○○○
산림	^^ ^^
황무지

통계사무소

통 계 청

작성년월일 19 . . .

작성 자



조사구안내

담당자현황

담 당 기 간	담 당 자	비 고
~		
~		
~		
~		
~		
~		

기타참고사항